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1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5. 3. 26.(목) 14:0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최성준 위원장
허원제 부위원장
김재홍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1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성원보고해 주십시오.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 국민의례

- 최현숙 의안조정팀장
 - 국민의례가 있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5년 제1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속기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제11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 <보고안건> 1건이 공개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SK텔레콤(주) 및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5-12-050~051)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SK텔레콤(주) 및 관련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SK텔레콤(주) 및 관련 유통점이 지난 1월 1일~1월 30일 기간 중 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 및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유도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조사배경은 지난 1월 초·중순 발생한 이동통신 시장과열로 1월 19일~20일간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SK텔레콤이 시장 과열을 주도하고 단말기유통법상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여 SKT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SKT의 유통망 현장조사는 1월 21일~2월 11일까지 실시하였고, SKT에 대한 시정조치안과 36개 유통망에 대한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3월 19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사실조사 결과입니다. 조사대상입니다. SKT의 1월 1일~1월 30일간 가입건수 992,596건 중 위법행위 민원신고, 가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38개 유통점의 전체 가입자 2,960건을 조사하였습니다. 위반사항입니다. 먼저 ‘지원금 과다 지급’입니다. SKT 관련 31개 유통점에서 2,050명의 가입자에게 현금 페이백 등의 방법으로 공시 지원금보다 평균 228,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입니다. SKT에서 갤럭시 노트4와 아이폰6의 경우 장려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상향하는 등 과도하게 지급함으로써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조사 거부·방해’입니다. SKT 및 일부 유통점에서 조사현장 접근 거부, 자료삭제 지시, 조사방해 전산프로그램 운영 등 총 6건의 조사 거부·방해가 발생하였습니다. 3개 유통점에서 판매사무실 폐쇄, PC 파괴 등 접근방해 행위가 발생하였고, SKT 직원 및 1개 대리점에서 각각 E-mail과 SMS를 통해 조사자료를 삭제토록 전파·지시하였으며, 1개 대리점에서 현금페이백 등 위법행위를 은닉·삭제할 목적의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SKT ICT기술원에서 전산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고도화를 총괄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위법성 판단입니다. SKT 및 관련 유통점이 일부 이용자에게 공시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고, SKT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과도하게 지급하여 일부 이용자에게만 지원금이 차별적으로 지급되도록 유도한 행위는 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SKT 및 관련 유통점이 조사현장 접근 거부, 자료삭제 지시, 조사방해 전산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방해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일단 위법성 판단까지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촬영 카메라가 나간 상태에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사항과 위법성 판단까지, 지금 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실태조사는 1월 19일, 20일 양일간 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런데 시장이 요동친다는 문제를 간파한 것이 16일이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16일 금요일 오후부터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통3사 대표 간부들을 불러서 자제하라고 권고했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문제가 있다, 자제해야 한다, 이것이 계속 이렇게 가면 과열 주도사업자 1개사를 잡아서 단독조사를 하겠다고까지 그때 이야기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그 전부터도 수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이제는 1개 주도사업자를 선정해서 단독조사하겠다고 사전에 이야기한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추진경과를 보면, 1월 19일~20일까지 이통3사에 대해 실태점검을 했고 21일 이후부터 SKT에 대해 현장조사를 했는데 이 현장조사가 단독조사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19일, 20일 양일간 3사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SKT에 대한 단독조사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들이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6일, 17일, 18일 3일간의 시장 상황에 대하여, 상황반을 통해 들어온 신고건수와 또 실제로 저희들이 이틀간 실태점검을 하면서 그 사실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주된 대상은 리베이트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부분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그다음에 3사간의 리베이트 수준을 집중적으로 비교하였던 것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래서 SKT에 대한 단독조사를 해야겠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 다른 두 사에 비해 이틀 동안 장려금 수준이나 지원금 수준 그 자체가 두드러지게 과도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두 번째는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유도'라고 해서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제9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9조 제3항을 보면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등의 행위를 이통사가 한 경우인데, 여기에 보면 결국 장려금이 대리점에서 이용자들에게 가는 지원금으로 포함되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들이 그동안 오랜 조사 경험을 통해 또 지난 위원회에서도 논의하신 바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과도하게 장려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공시 지원금 우회 지원을 유도한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제9조 제3항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내용을 보면 SKT가 시장과열을 주도한 기간은 1월 16일~18일까지 3일간이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때 조사를 해서 SKT가 시장과열을 주도했다는 판단을 한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조사기간을 한 달로 연장한 것이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이 3일간은 SKT가 시장과열을 주도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한 달간의 단독조사 기간 동안에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전체적으로 보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문제와 실제 조사대상 기간을 결정하는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초기에 조사했던 3일간은 명백히 SKT가 시장과열을 주도했으나, 단독조사를 했던 한 달간은 SKT가 시장과열을 주도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1월 초순부터 한 달간 전체적으로 비교분석해 본 결과, 사업자간 약간씩 오르고 내리고 하는 차이는 있었습시다만 1월 초순에도 SKT가 두드러지게 과열을 주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대상 기간을 1월 1일부터 포함하였고 또 저희들이 한 번 조사하게 되면 어차피 위반행위의 중지 여부까지 다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조사대상 기간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월 1일~1월 30일까지 대상기간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희가 시장과열을 인지하고 마케팅 담당자나 관련 임원을 불러서 중지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SKT 쪽에서는 중지명령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저희가 어떤 형태로 중지 의견을 전달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진위에 대한 공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고받기로는 담당 통신시장조사과장이 금요일 저녁에 3사 임원들을 상대로 회의를 소집해서 1차 구두 경고를 하였지만 이 부분이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2시간 이내에 시정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는 상황이 끝나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만 금요일 오후에 시장이 안정되지 않았고 토요일까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토요일에도 통신시장조사과장이 다시 한 번 해당 임원들을 불러서 다시 한 번 주의를 주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다시 일요일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그 상황까지 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장과열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어떤 이통사들이 됐든지 간에 저희들이 주의를 주면 대부분 2시간 이내에 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건에 있어서는 실제로 무려 3일간에 걸쳐 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SKT가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쭙 보면 통상 저희들이 시장 과열 주도사업자를 선정할 때 위반율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반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실제 가입유형별 점유율, 그에 따른 위반율과 위반율을 산출하기 위해 추출했던 표본의 가입유형에 따른 위반율에 차이가 있다고 소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기법, 능력, 인력상 한계가 있고 또한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압수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행정상 조사하는 데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전에 가능하면 조사계획을 통보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고, 가입자와 관련된 모든 기록관리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으나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수집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듣기에 아까 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이틀 동안 실태점검을 하다가 조사를 연장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1월 19일과 20일은 3사에 대해 유통망 전반에 걸쳐 실태점검을 한 것이고, 실제 SKT에 대한 단독 현장조사는 21일부터 한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21일부터 20일간 3주 정도, 조사대상기간은 1월 1일~1월 30일까지...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정리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그 과열을 주도하고 지속시킨 이통사가 어디인지를 선정하는 것과 선정된 이후에 일정 기간 그 이통사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은 구분을 해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SKT가 1월 16일 또는 17일~19일까지의 상황에 대해 과열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는데 그런 추상적인 설명에서 좀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7일, 18일, 19일 그 기간 동안에 이통3사의 리베이트 지급 수준에 대해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저희들이 실태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자료가 어떻게 됩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들이 실태점검한 결과 17일, 18일, 19일 3일간의 기록을 보면 SKT는 갤럭시 노트4를 기준으로 해서 최대 48만원까지, KT는 최대 37만원, LGU+는 최대 33만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다른 두 회사와 비교해 봤을 때 장려금을 10만원 이상 더 많이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동기간 중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상황반에 제보된 장려금 30만원 초과 지급건수를 보면 SKT는 60건 이상, KT는 약 30건 내외, LGU+도 30건 정도 초과했습니다. 따라서 SKT에 대한 상황반 제보 건수는 거의 2배 가까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또 하나 SKT가 다른 이동통신사와 차이가 나는 점은 17일, 18일도 노트4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장려금 지급 수준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주말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노력한 결과, 19일에 KT와 LGU+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SKT는 19일에도 40만원이 넘는, 43만원에 이르는 높은 장려금을 계속 지급해 왔던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17일, 18일, 19일 그 기간 동안 소위 번호이동의 증감은 어떠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물론 그때 당시 17일, 18일은 주말 전산이 오픈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 그 다음 주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거쳐서 개통합니다만 저희들이 19일, 20일 이틀간 순 증감을 보면 SKT의 경우 +8,505명, KT의 경우 -8,712명, LGU+는 +207명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결국에는 17일, 18일, 19일 동안에 과다 장려금을 지급한 결과 이와 같은 번호이동 순증이 대폭 이루어졌다고 봐도 되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SKT를 과열 주도사업자로 선정한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미 고지한 것처럼 그 기간 동안에만 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앞뒤로 특히 뒤 부분에는 과연 이것이 진정되고 있는지 조사했던 것이지요. 1월 앞부분에도 약간의 과열된 현상이 나타나려다가 없어졌던 적이 또 있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또 있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1월 1일~1월 30일까지 그 기간을 정해서 조사하게 된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가지만 여쭙 보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과열 주도기간에는 MNP(Mobile Number Portability)에 있어서 SKT의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예를 들어 저희가 조사했던 한 달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3사의 MNP 증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것은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최성호 통신시장조사과장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월 전체를 봤을 때 1월 상순에는 SKT가 39.8%로 '14년 12월의 37.4%에 비해 늘어났고 1월 17일~30일까지 1월 하순에도 41.9%로 MNP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조사를 끝낸 30일 정도에 안정됐다고 보고한 그다음에는 38%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월 전체적으로 보면 39.8%에서 41.9%로 SKT의 번호이동 점유율이 다른 때보다 높았었고, 그 사이에 다른 사업자들을 보면 증감은 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비율로는 감이 안 오니까 건수로 이야기해 주시지요.

○ 최성호 통신시장조사과장

- 1월 상순은 일평균 5,900건 정도 있었고, 1월 하순은 6,631건 정도의 MNP가 SKT에 있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증가했었다는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1월의 총 증감 합계를 보면 SKT는 +2,145명이고, KT는 -16,689명, LGU+는 +14,544명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MNP로만 보면 LGU+가 SKT의 7배 정도 되네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최성호 통신시장조사과장

- 참고로 그 전에 '14년 11월, 12월을 보면 LGU+의 순증이 4만건, 3만건 하다가 1월에는 1만건으로 줄어들었고, SKT는 그 전에는 2만건 정도 마이너스였다가 1월에는 플러스로 됐기 때문에 그 점을 참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진술이 예정되어 있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의견진술인 들어오시라고 하시지요.

(SK텔레콤(주) 의견진술인 입장)

○ 최성준 위원장

- 다섯 분이 출석하셨습니까?

○ 이형희 SK텔레콤(주) 부사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먼저 이형희 부사장님, 그다음에 하성호 전무님, 윤원영 전무님 그다음에 김용섭 변호사님, 고환경 변호사님, 앉으시지요. 지금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 SK텔레콤(주)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형희 SK텔레콤(주) 부사장

- SK텔레콤(주) MNO 총괄을 맡고 있는 이형희입니다. 먼저 이번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진술 요청 공문을 통해 대표이사 참석을 권고하신 것과 관련하여 당사의 대표이사를 대신해서 본 건 관련 SK텔레콤(주) 통신사업 분야의 총괄을 맡고 있는 제가 참석하게 된 점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당부 드립니다. 우선 지난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발효 이후에 아이폰6 대란에 따른 이통 3사 제재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장과열에 대한 문제로 이 자리에 출석하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특히 정부의 불법지원금 근절 노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사례가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심결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에 3사가 모두 관련된 소위 아이폰 대란 때와는 달리 최초로 단독조사를 실시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번 위원회의 판단이 향후 통신시장 규제에 있어서 준거의 틀이 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기간 중에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정책 수립 시 단말기유통법의 건전한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새로운 정책의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향후의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해 왔음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SK텔레콤(주)은 이번 단독조사를 계기로 단말기유통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이를 준수하기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세한 의견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용섭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SKT의 법률상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김용섭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정조치안과 관련하여 SKT의 의견을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과 위원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가장 기본적인 입장 2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SKT는 단말기유통법 준수를 위해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약속 드린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단독조사에 대해서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첫 사례입니다. 향후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2가지 기본적인 입장의 전제 하에서 한 3가지 정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3가지 주제인데 첫 번째 주제는 이번에 단독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SKT 입장에서는 다소 가혹한 몇 가지 사정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정들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단독조사하는 과정에서 표본추출의 적정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정조치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리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단독조사로 선정된 것이 다소 이례적이라는 사정이 있어서 가혹하다 하는 사정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취지입니다. 이번 단독조사의 대상은 그 이전에 1월 16일~18일 혹은 1월 17일~19일 그 사이에 과열이 발생했고 그리고 실태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단독조사가 되면서 1월 한 달 전체로 조사대상 기간이 확정되었습니다. 3일간의 시장 상황만으로 1월 전체 시장 상황을 예단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서 저희들은 매우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 과열 주도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실제 과열 주도기간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가령 3일간의 시장 상황이 위법했다면 조사대상 기간도 실제 위법이 발생한 3일간 정도로 설정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러한 의견입니다. 혹시 만약에 1월 한 달간 단

독조사가 필요했다면 1월 한 달간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고 단독조사 대상 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는 단독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 그 기간 동안의 구체적인 시장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지난 12월 말 후반부터 이번 조사대상 기간이 되었던 1월 말 정도까지의 기간을 잡아봤습니다. 먼저 그래프가 2개 있는데 위에 있는 그래프는 1일 번호이동의 순증감 추이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잡아봤습니다. 이것은 각사별로 통계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왼쪽의 12월 말부터 오른쪽의 1월 말까지 기간 동안 쪽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빨간선으로 연결된 것이 A사이고 노란선으로 연결된 것이 B사, 그리고 SKT가 파란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프만 봐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처럼 1일 번호이동의 순증감이 12월 말 기간 동안에 보면 A사가 현저하게 컸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오른쪽에 붉은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1월 초가 되면 이번에는 B사의 번호이동 순증이 꽤 규모 있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서 보면 이번에 문제가 된 1월 17일~19일, 혹은 16일~18일 그 사이 기간의 번호이동을 보면 SKT의 번호이동이 꽤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태 점검 대상이 되었던 기간 동안 SKT의 번호이동의 순증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앞에 있었던 A사와 B사의 순증의 크기와 비교해 봐서 현저하게 차이가 날 만큼 컸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을 그림으로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래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의 그림은 1일 번호이동의 규모를 한 번 그림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은 각사의 번호이동의 건수를 전부 다 모아서 수치화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제일 왼쪽이 12월 말 정도이고 오른쪽이 1월 말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 부분 12월 말쯤 보면 번호이동이 24,000건을 넘는 순간이 나타남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1월 초에 또 한 번 1일 번호이동의 건수가 24,000건이 넘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이번에 문제가 된 1월 17일~19일 사이에 약간의 번호이동의 규모가 있긴 한데 이때는 24,000여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래와 위 그림을 이번에는 시간별로 쪼개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12월 말에 있었던 상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일 번호이동이 24,000건이 넘어서 이것은 상당히 시장이 과열되었다, 이렇게 불만한 그러한 수치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위 그림으로 올라가서 보면 A사의 번호이동이 특별히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사무국에서는 시장은 안정화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단독조사를 시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약간 오른쪽으로 가 보겠습니다. 1월 초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1월 초의 상황 아래 그림을 보면 이때도 역시 1일 번호이동건수가 24,000건이 되어서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볼 소지가 있는 그러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에 아래의 그래프를 보면 B사의 번호이동건수의 순증이 다른 타사에 비해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시장은 과열되어 있고 B사의 순증이 증가했지만 사무국에서는 역시 이 부분에서도 시장은 안정화되어 있다고 본 것 같고 단독조사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1월 17일~19일까지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아래 그래프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면 1일 번호이동의 건수가 24,000건에 미치지 못해서 오히려 이 자체만 봐도 시장은 과열되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던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실태점검이 이 기간에 이루어졌는데 이 기간 동안에 SKT의 번호이동이 꽤 많이 이루어졌다는 이러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시장은 안정화되어 있지만 SKT의 순증은 다소 증가되어 있

는, 이런 정도로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있던 두 상황과 지금 이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이번에 실태점검을 했던 1월 17일~19일 사이, 이 정도 기간 동안에는 SKT의 단독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로는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들이 호소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약간 시각을 바꾸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월 17일~19일 사이에 시장은 안정화됐는데 그러면 왜 SKT는 그 기간 동안 타사에 비해 번호이동 순증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한 번 분석해 봤습니다. 다음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려금, 지원금 용어가 조금 여러 가지로 사용됐습니다만 지원금으로 통일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지원금을 초과 지급했던 상황이 하나 있었던 것 외에 SKT에서는 그 당시 주말을 맞이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3개 정도 동시에 펼쳤습니다. 첫 번째는 단말기 출고가액 인하입니다. 4개 기종에서 최대 30만원 조금 넘는 선까지도 출고가를 인하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원금을 상향했었습니다. 그리고 선호단말기를 추가로 공급했습니다. 이 당시 선호단말기는 짐작하시겠지만 아이폰6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단말기를 추가로 공급하는 시점을 이때로 잡았을 뿐입니다. 참고로 한 달쯤 전인 전년도 12월에 타사들은 그때 선호단말기인 아이폰6를 대량으로 추가 공급해서 그때 번호이동 순증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타이밍을 이때로 잡아서 이때 선호단말기 추가공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원금 초과 지급 이외에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을 동시에 펼쳐서 이렇게 번호이동의 순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6쪽을 보면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고 특히 7쪽을 보면 실제로 3개 정책으로 인해 단말기 번호이동이 5,000여건 정도 순증이 됩니다. 이 수치는 저희들이 지원금 초과지급 때문에 번호이동의 순증이 있었다고 의심받는 규모의 수치입니다. 즉, 다른 경쟁력 강화정책의 효과에 힘입어서 이 정도의 번호이동이 있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도 사업자 간의 위반 정도가 비슷하다면 과열 주도사업자로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례도 판단함에 있어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8쪽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소주제를 바꾸어서 단독조사 착수 이후 시장 상황이 어땠는지 이 부분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에게는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SKT가 사무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과열시키고 그리고 지원금 수준을 높였다, 이렇게 의심을 받고 있지 않은가 해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대목입니다. 이것을 설명 드리기 위해 그래프와 그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이것은 단독조사 착수 이후인 1월 21일부터 그다음 달인 2월 28일까지 한 40일 기간 동안 각 사업자별의 번호이동 순증감 추이를 한 번 그림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역시도 빨간선은 A사이고 노란선은 B사이고 파란선은 SKT입니다. 이 그림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파란선인 SKT의 순증감의 추이가 타사에 비해 특별히 많았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A사의 경우가 훨씬 더 높았다는 것을 그림으로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치로 정리해 봤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 중에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그 기간 동안 번호이동의 누적치를 보면 SKT는 그 기간 동안 오히려 16,000여건 순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400건이 넘는 순감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사의 번호이동을 전부 다 모았던 1월 평균 번호이동도 이 당시에는 특별히 과열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수치였는데, 한 18,000여건 정도 됩니다. 지금 말씀 드린 시장 상황에서 실제 사정을 보면 하루 평균 번호이동건수 면에서는 이 기간 동안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SKT의 번호이동

이 순감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원금 수준을 높이지 않은 결과였기 때문이라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단독조사 착수 후에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노력이 계속 되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수치로 반영되었던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경위까지를 말씀 드렸고, 이번에는 조사과정에서 표본 선정에 관해 한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표본조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본조사에 있어서는 표본추출이 적정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청사항일 것입니다. 그런데 가입형태별 표본을 보면 기기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기기변경은 지원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법 위반 수준이 낮다, 대개 이렇게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입형태 중에서 번호이동의 경우에는 지원금 초과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위반 수준이 높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표본조사에 있어서는 법 위반 수준이 낮은 기기변경에 대해서는 실제보다 과소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편 법 위반 수준이 높은 번호이동에 대해서는 실제보다 과다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정조치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법 위반 수준은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산되는 왜곡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쟁점과 관련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결정례가 있습니다. 표본추출이 위반율이 높은 데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한다면 지나치게 과중한 처분을 하게 된 것이고 이는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결정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결정하실 때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독조사와 관련해서는 마무리를 하면서 중간 소결론을 한 번 지어 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실태점검 기간 동안의 시장상황 그리고 단독조사 대상기간 중의 시장상황 그리고 단독조사 이후의 시장상황, 표본 선정의 적정성, 저희들이 짚어본 이러한 것들에 비추어 보면 이번 단독조사의 개시와 과정이 SKT에게는 상당히 가혹한 측면도 있다는 것을 심결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시정조치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은 다 제쳐 놓고 신규모집금지, 흔히 영업정지라고도 불리는 그 부분 조치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규모집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이것을 조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단말기유통법 제 14조 제2항 제7호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신규모집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2가지 경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에는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지원금 초과지급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결을 하시면 지난 아이폰6 대란을 포함해서 두 번째 심결이 됩니다. 즉, 과다한 리베이트 지급행위와 관련해서는 아직 같은 위반행위가 2번에 그치고 있을 뿐 3회에 이르지 않았음을 역산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모집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다음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모집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법의 규정상 이용자 피해방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입니다. 실제로 그러한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단독조사 착수 이후의 시장 상황에 대해서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1월 21일~2월 28일까지에 대해서 1일 평균 이동은 1.8만건 이하로 상당히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SKT의 번호이동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순감이었고, 그 누적치가 무려 16,000여건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단독조사 이후에 오히려 시장이 안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용자 피해방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을 한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경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것 중에 또 하나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은 이용자 피해방지가 '현저하게' 곤란해야 한다는 현저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현저성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저성을 판단하려면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당해 행위의 기간, 횟수, 시기, 이익이 저해되는 소비자의 범위, 이런 것들을 살펴서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라고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비추어 봐서 이번 조사가 거기에 해당하는지 한 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과열기간은 3일 정도에 불과합니다.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현저하게 피해방지가 곤란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기간이 아주 짧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의견입니다. 그 외에 조사 착수 이후에 법 준수를 위한 노력을 분명히 하였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의 시장 안정화 정책에도 저희들이 협조했고 그 결과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가 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단독조사 이후의 시장상황에 대해서는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용자의 피해가 방지되었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를 때에 현저성 요건 역시 충족이 안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관점을 바꿔서 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2쪽입니다. 아이폰6 대란 당시의 상황과 한 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정조치안의 기준만 놓고도 한 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이폰6 대란 때에는 평균 초과지원금이 28만원 조금 넘는 선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대상은 22만원 조금 넘는 선이어서 초과지원금의 규모가 적습니다. 리베이트 수준도 아이폰6 때에는 54만원이 맥스(max)였는데 이번 조사기간에는 49만원이 맥스였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더 적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 번호이동의 수치도 아이폰6 대란 때에는 22,000건이 넘었던데 반해 이번에는 18,000건 전·후입니다. 현저히 차이날 정도로 적습니다.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 새벽에 줄 서고 대단했던 것을 기사로 본 기억이 있습니다. 더욱이 개통이 취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피해가 현실적이었던 것에 반해서 이번 상황에서는 줄을 섰다든가 이런 사회 문제가 됐다고 하는 기사나 상황보고가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4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 이렇게 아이폰6 대란에 대한 제재 당시와 비교해 볼 때 과열 정도나 위반 수준이 더 낮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단독 제재에서 판단을 달리 한다면 이는 평등 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정조치와 관련해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지만 신규모집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 2가지 경우 모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아이폰6 대란 때와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러한 사정들을 모아본다면 신규모집금지 조치를 하기 위한 요건은 아직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기본자세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SKT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해서 더욱 더 단말기유통법을 엄정하게 준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단독 조사 및 제재에 관한 최초 선례가 된 점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신중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신규모집금지와 같은 이러한 처분은 유통망이나 소비자,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SKT 입장에서는 이번 단독조사를 받게 됨으로써 두 번째 위반상태가 되었습니다. 다른 회사와는 달리 1번 더 위반하면 바로 영업정지 처분, 신규모집금지 처분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독조사 자체만으로도 크나큰 처벌효과가

생겼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에 대해서 판단하실 때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아직 위법성까지만 논의하고 향후 시정조치에 관해서는 보고받거나 논의하지는 않았습시다만 시정조치 관련해서 조사방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진술하실 것은 없습니까?

○ **하성호 SK텔레콤(주) CR부문장**

- 아까 사무국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조사과정에서 몇 가지 조사방해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앞으로 차후에 다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저희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의견진술인에 대해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피심인 측에서 한 의견진술 내용에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실 때는 크게 3가지 정도라고 했는데 이것을 위원님별로 전체적인 것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몇 가지 그루핑(grouping)해서 하는 것이 좋을지 몰라서 한 번 여쭙 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나누면 서로 또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쪽 설명하신 것 중에 단독조사 대상이 되느냐, 그다음에 대상 선정 이후의 상황, 표본의 적정성 등 단독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의견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단독조사, 그 이후의 시장상황, 표본선정 부분에 관해서 먼저 질문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정조치에 관해서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저는 지금 법무법인에서 나와서 말씀하신 법률사항 말고 정책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고자 합니다. SKT 회사 측의...

○ **최성준 위원장**

- 정책사항이요?

○ **김재홍 상임위원**

- 예. 저는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나중에 조금만 질문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정책은 포괄하는 것이니까 먼저 질문하시지요.

○ **김재홍 상임위원**

- 먼저 정책을 묻겠습니다. SKT에서 나오신 분, 물론 법무법인에서 나오신 분이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만, SKT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이지요? 지금 시장점유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 **하성호 SK텔레콤(주) CR부문장**

- 이번에 시장점유율이 새로 발표되어서 49.6% 정도 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49.6%로 발표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50% 이상 부동의 1위를 몇 년째 이어오고 있지요?

○ **하성호 SK텔레콤(주) CR부문장**

- 한 10년 좀 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제가 알기로 11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2, 3위 사업자가 도전적으로 마케팅을 한 데 대해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방어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해서 위반행위를 했다고 해명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점유율 50% 이상의 시장지배적사업자가, 11년 정도의 시장 지배를 해 온 기업이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는 점입니다.

○ **하성호 SK텔레콤(주) CR부문장**

- 그 부분은 시장 운영을 담당하는 마케팅부문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윤원영 SK텔레콤(주) 마케팅부문장**

- 일단 이 자리를 빌려 단독조사를 받게 된 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1위 사업자가 시장을 건전하게 끌고 가는데 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1월, 2월까지 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 큰 과열은 없었다고 봅니다. 1월, 2월의 사업자 간 경쟁의 양상은 주로 단말기와 지원금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아이폰에 대한, 선호 단말기에 대한 공급 그리고 저가요금제의 지원금을 굉장히 상향하는 형태로 해서 경쟁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15개월 이상의 단말기들, 어떻게 보면 단말기 공급량과 지원금 이 2가지 부분으로 경쟁 양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취지는 기업윤리의 측면을 질문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이른바 아이폰 대란 사건으로 각사의 영업부문 임원을 형사고발했고,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지요?

○ 윤원영 SK텔레콤(주) 마케팅부문장

- 예, 맞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경찰조사에 누가 소환되어 나간 적이 있습니까?

○ 윤원영 SK텔레콤(주) 마케팅부문장

- 예, 실무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런 상황에서 동일한 위반행위가 또 저질러졌다는 사실입니다. 단말기유통법을 시행한 이후에 극약처방이라고 했던 임원 형사고발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징적으로도 그렇고, 재발방지를 위해 한 번 써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책기구, 규제기구가 그런 극약처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결, 아직도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런 동일한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성호 SK텔레콤(주) CR부문장

-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 하성호 SK텔레콤(주) CR부문장

- 저희가 작년에 아이폰 대란으로 제재를 받고, 또 시장 안정화의 의지를 가지고 정부의 시장 안정화 대책을 만드는 데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현장에서 경쟁이 또 치열하다 보니까 일부에서 그런 위법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래서 정책 규제기구인 방통위로서는, 저는 우선 제재의 실효성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제재, 재발방지에 극약도 전혀 통하지 않는구나!”라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통신시장이 과열되고 요동친다는 언론의 지적, 비판도 있고 방통위가 무엇을 하느냐는 비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통 3사 책임자, 간부들에게 방통위가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확인한 것처럼 과열 주도사업자를 단독조사할 수도 있다, 그렇게 가겠다, 빨리 시정하라고 사전에 예고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자들

은 다 시정했는데 SKT만 그대로 마이웨이(my way)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법률과 제도, 정부 규제기구의 역할..., 권능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정부 규제기구의 역할을 무력화시킨 행위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형희 SK텔레콤(주) 부사장

- 결과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다만, 저희 내부 반성을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자면 그 당시 번호이동 총 숫자 규모가 시장 전체에서 20,000건이 안 되는 17,000, 18,000건 이 정도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위급함, 위중함을 잘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 같으면 20,000건 후반대, 27,000~28,000건, 30,000건, 40,000건 이렇게 될 때 '아, 이것 큰일 났구나!' 이렇게 된 데 반해 어떻게 보면 과거와 패러다임이 달라진 것에 대해 저희 내부적으로 위급성의 정도가 비단 MNP 총 숫자만이 아니라 시장의 세부적인 측면도 다 잘 지켜져야 한다는 그러한 측면이 내부적으로 간과된 것에 기인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세부적인 측면도 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리고 이번 사건의 새로운 양상이라고 할까, 특히 아주 주목해야 하는 점은 방통위 담당자가 현장조사, 실태조사에 나가니까 단말기유통 자료가 기록된 전산 시스템 삭제, 은폐, 조사 방해라고 표기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실태조사 방해에서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까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계를 집어넣어서 오도하지는 않았고 자기 방어 차원에서 삭제·은폐했다고 했지만 이것이 SKT만의 일입니까, 아니면 이통 3사, 시장 다른 데에도 있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 이형희 SK텔레콤(주) 부사장

- 매우 난처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를 저희들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 대하여 아무리 자기 방어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앞으로 그러한 일은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통신시장을 규제한다고 할까, 질서를 지키게 할 책무가 있는 방통위로서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서 그렇게 삭제, 은폐하면 어떻게 정책을 펴며 규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해킹도 있지만, 날고 기는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마케팅하고 실태조사를 방어하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입법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법률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짚으면, 저는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질문할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독조사 대상 선정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고 샘플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 세상에 도둑이 많지요. 그런데 소문이 나서 잡힌 도둑에 대해 처벌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우리만 처벌하고 다른 많은 도둑은 잡아서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항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책당국으로서 행정인력과 역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 집중 단속기간을 정해서 조사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이 있고, 샘플링, 표본선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는 지역 대리점을 우선적으로 볼 수 밖에 없고, 또 하나는 조사 하려고 하니까 자료가 잘 잡히지 않고 다 삭제한 일이 있습니

다. 사회과학적 방법론을 따지는 여론조사 샘플링과는 다릅니다.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샘플링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것이 이용자 차별로 사회 문제화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사회적 능력이 없는, 여론 형성 능력이 없는 절대 다수의 이용자를 차별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도권 언론을 통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이지, 소수의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지원금 과다 지급의 문제이고, 절대 다수의 이용자 차별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위반행위로 인해 처벌해야 한다는 입법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SKT에 대한 단독조사 또 방통위 사무처에서 했던 직무수행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오늘 심결에 이르렀는데, 그 제재는 적법하다, 근거는 있다, 분명하다고 봅니다. 다만 어떻게 할 것인가, 형량의 문제라고 보고, 그것은 고민하고 논의해서 정해야겠지요.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전혀 제재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흐름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 **김용섭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답변을 짧게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 드린 기본 기조는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 드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처벌을 받아야 할 부분도 있고 처벌하기에는 조금 법리적 혹은 심증적으로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만, 이 러이러하게 감안해 줄 만한 사정이 있으니 수위를 정할 때 심분 참고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돌아가서 앞으로 영업활동을 할 때 세세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앞부분에 대해서만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먼저 포괄적으로 하나 여쭙 보겠습니다. 회사를 대표해서 나오신 이형희 부사장님께 한 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앞서 하성호 부문장께서 '지난해 단말기유통법 제정 당시에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당시에 시장점유율 1 위 사업자로서 나름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입법에 적극 협조했고, 공정경쟁을 하기 위해 나름 많이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말기유통법에 의한 첫 번째 단독조사와 그 제재 대상으로서 SKT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 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또 한 번 이야기하겠지만 먼저 피심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부사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이번 제재 건을 포함하면 단말기유통법 제정 이후에 세 번째 제재사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여전히 효율적인 공정경쟁 체제가 구축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위반행위가 반복되고 있는지에 대해 간단히 여쭙고 싶습니다. 과연 법과 제도가 미비하여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시장구조의 문제인지 그리고 사업자의 준법 의지가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지와 정책이 잘못된 것인지, 도대체 어떤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형희 SK텔레콤(주) 부사장

- 말씀 올리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지금 현재 끊임없이 단말기 지원금, 과거의 이름으로는 보조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속되는 문제는 같은 문제지만 과거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정도의 차이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지원금으로 인해 시장이 요동치는 경우가 적어도 지금의 2배 정도는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계표를 보시면 아마 그 수치나 여러 가지 다 나올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새롭게 바뀐 법 체계 속에서 적응을 아직은 다 못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번호이동의 규모나 시장이 히팅(heating) 되는 정도 그리고 그 빈도는 확연히 지난번보다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속성, 소비자들은 싸게 사고 싶어 하고 회사는 많이 팔고 싶어 하는 속성 때문에 룰에서 가끔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마도 이러한 경우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게 될 것이고, 그다음부터는 시장이 확연하게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하나 더 여쭙 보면, 1월 연초에, 그것도 작년 아이폰6 대란 이후 저희가 3사에 대해 제재한 직후 얼마 되지 않은 단기간에 법 위반행위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왜 연초부터, 특히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하는 연초부터 그리고 시장에서 5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SKT가 어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안정되어 있다, 크게 가입자가 증가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말 그대로 소탐대실(小貪大失)을 하는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왜 1위 사업자인 SKT 주도로 이 시점에 이러한 법 위반행위가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 본사의 정책적인 문제점으로 발생한 것입니까, 아니면 유통망에서의 문제입니까? 어떤 것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 이형희 SK텔레콤(주) 부사장

- 아까 저희 프레젠테이션 4페이지 그림표가 사실은 많은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표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각사별로 특히 번호이동 건수가 급증하는 시기가 각각 다 다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파도치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러한 흐름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월 16, 17, 18일 그 사이를 딱 끊어서 그 시점을 놓고 보면 'SKT가 왜 이렇게 됐지?'라는 시각을 분명히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 달 정도를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과연 그 사이에 SK텔레콤이 꼭 그렇게 계속 했느냐? 지속성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바와 같이 SKT가 왜 이렇게 됐느냐? 16, 17, 18일 그 3일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아마 여러 가지 많은 내·외부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내부 구성원들의 지위체계라고 할까, 그러한 회사의 방침이 실제 하부단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각자의 목표를 위해 각 부서에서 많이 뛰어버린 그러한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뀐 내·외부적 경영환경 속에서 좀 더 열심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쭙 보겠습니다.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중지요청을 하고 또 그 중지요청을 회사에서는 수용하지 않아서..., 어찌 보면 그 시점에서 우리 위원회의 중지요청을 수용하고 그쳤다면 과거 사례와 비교해서 봤을 때도 사실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의 시정조치안과 회사의 소명서를 보면 이 부분에 가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쪽에서는 수차에 걸쳐 위법행위 중단을 분명히 요청했다고 했고, 회사에서는 그것에 대해 수용하고 과열을 자제했다고 합니다. 과열을 자제한 것입니까, 과열을 중단하도록 노력한 것입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 위원회의 입장과 회사의 입장이 다른지?

○ **이형희 SK텔레콤(주) 부사장**

- 그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도 가장 답답해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저희 내부 잘못 위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시장이 과열되었다, 시장을 쿨다운시키라고 하는 경우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있습니다. 계속 있는데 보통 담당 팀장 또는 상무급 임원들에게 그러한 연락이 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문제가 심각하다면 보통 전무급 이상의 임원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때가 되면 저희들은 '아, 정말 심각한 상황인가보다'라고 해서 아주 센 강도로 단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워낙 자주 있는 수준의 강도가 온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담당 팀장 또는 담당 상무 레벨로 연락이 금·토·일 3일간 온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실은 저희 회사 경영진에서는 '단독조사'라는 그러한 사실이 발표되고 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됐느냐? 시장은 안정되어 있었다는데 우리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내부적으로 많이 다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희 현장에서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일상적으로 예전부터 있어왔던 경고를 이제는 바뀐 법 환경 하에서 바뀐 관리체제로 저희가 대응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일상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그러한 실무자 레벨의 경고도 위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시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시장 단독조사를 한 이후에는 저희들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말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발표자료에도 보셨듯이 하루 400건이 넘는 마이너스가 있었고 누적적으로 16,000건 이상의 마이너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그 상황 속에서 평소보다 더 조사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근신해야 한다는 취지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아주 위중하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자료를 보면 1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이통 3사의 영업 담당 상무급 회의를 소집해서 저희들이 경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석한 임원으로부터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으며, 그 보고받은 이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형희 SK텔레콤(주) 부사장

- 1월 17일 그 당일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고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까지도 사실은 그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회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회의에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내부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니고, 아마 금요일 상황을 두고 한 것 같은데….

○ 고삼석 상임위원

- 아니요, 토요일입니다. 과장님! 토요일 상무급 회의를 했지요?

○ 최성호 통신시장조사과장

- 금요일과 토요일에 했습니다.

○ 윤원영 SK텔레콤(주) 마케팅부문장

- 토요일 상황이, 영업 담당인 마케팅전략본부장이 타 지역에 있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워크숍 중이라서 양해를 구하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요일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일요일에 방통위의 니즈(needs)들을 제가 별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긴급하게 전국의 영업 담당들을 모아서 시장 안정화에 대한 지시를 제가 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토요일 회의 소집에 불참하셨다고요?

○ 윤원영 SK텔레콤(주) 마케팅부문장

- 예, 타 지역에 있었습니다. 사전 예고된….

○ 고삼석 상임위원

- 회사에는 담당 임원이, 상무급 임원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까?

○ 윤원영 SK텔레콤(주) 마케팅부문장

- 마케팅전략본부장이 영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분명히 말씀하셔야 하는데, 일요일 회의에 참석해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장려금이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조치하셨다고 했습니까? 일요일….

○ 윤원영 SK텔레콤(주) 마케팅부문장

- 예,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조치를 하셨습니까?

○ 이형희 SK텔레콤(주) 부사장

-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후적으로 단독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왜 그렇게 됐는지 파악해 봤습니다. 일요일 날, 지금 말씀 드린 리베이트 수준이 그 당시 높다는 경고가 왔었고, 그 높아진 리베이트 수준을, 여기에 있는 마케팅 총 책임자인 윤원영 마케팅부문장이 일요일에 5만원을 내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3만원을 내리라고 지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하면 SK텔레콤의 각 지역본부에는 분명히 내려갔는데 SK텔레콤에서는 SK텔레콤의 소매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PS&M이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자회사에서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나중에 적절한 문책을 할 예정입니다만 회사 안에서도 각 조직간 약간의 경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지역본부에는 분명히 그 지시가 전달이 됐고..., 아마 시장조사도 주로 소위 말하는 타깃점 위주로 조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타깃점이라는 것이 주로 PS&M의 대리점을 조사한 것 같습니다. 마케팅에 '5만원 내려라', '3만원 내려라'라는 저희 지시가 PS&M에 약 80%는 내려갔고 약 20%에 달하는 곳에서는 그 지시가 안 내려간 것으로 사후적으로 파악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저는 그 인식에 대해 지금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48만원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는데 방통위에서 3사 불러서 회의하고 그다음에 정상화시켜 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내린 지시는 '5만원 빼라', 과거에도 저희가 회의를 해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3사에 공히 같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도 늘 '5만원 빼라'고 지시를 내렸습니까?

○ 윤원영 SK텔레콤(주) 마케팅부문장

-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사나 지역본부에서 내린 리베이트는 기본적으로 30만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3사 다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일부 타깃 판매점이라고 해서, 아마 사무국에서 조사한 내용들이 그런 타깃점들에 지급되는 별도의 고액 리베이트를 조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전체적으로 30만원에 형성되어 있는 기본 리베이트를 5만원 이상 내리라고 지시했고 타깃점에 관련되는 정책도 추가적으로 주는 부분들을 내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0만원의 기본 리베이트를 이들에 걸쳐 8만원 정도 인하하도록 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위 말해 타깃점이라고 분류하시는데 그런 곳에 대한 통제는 앞으로도 계속 안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일은 또 반복된다는 것 아닙니까?

○ 윤원영 SK텔레콤(주) 마케팅부문장

- 사업자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스(mass)로 정책을 쓰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슈를 감안하여 타깃 판매점들을 정해서 쓰는 것이 현재 3사의 일반적인 경쟁 관행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여하히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방통위 사무국과도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부분의 준비도 필요하고, 사업자들도 그런 식의 잘못된 영업 관행들을 빨리 없애는 쪽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통제하는 방안 중에 강력한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대리점 관계를 단절하는 것 보다 더 이상 강력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타깃점의 영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니까 그것을 묵인하고서는..., 그곳에서는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와도 자기네 영업이익을 위해서는 그 지시를 안 들어도 관계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실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그렇게 쪽 지금까지도 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된다면 향후 큰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 이형희 SK텔레콤(주) 부사장

-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과거와 지금 단통법 이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과거에는 전면적으로 전국에 걸쳐 보조금이 크게 움직이다가 지금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타깃점 위주의 정책 그래서 약 20~30%의 매장별로 돌아가면서 보조금의 수준이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하루에 30,000건, 40,000건 그런 번호이동이 흔히 나타나던 반면에 지금은 20,000건 밑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현상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면 70~80%의 개선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개선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경쟁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한다는 핑계만으로는 힘들 것 같고, 지금 사무국과 일전 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향후 단통법의 세부적인 시행방법들이 가동될 것입니다. 특히 4월 1일부터는 새로운 룰들이 많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룰들이 상당히 크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고, 4월 1일 이후의 정책에 대해 저희들이 지금보다 백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만약에 설사 타깃점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또 그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는 과감한 조치를 취할 의향은 있습니까?

○ 이형희 SK텔레콤(주) 부사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의지는 있는 것입니까?

○ 이형희 SK텔레콤(주) 부사장

-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부위원장님 질문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타깃점에 대한 본사의 통제력은 있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분명히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PS&M 중심으로 한 타깃점들은 지시를 듣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시를 사장님이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윤원영 SK텔레콤(주) 마케팅부문장**

- 아니요. 제가 마케팅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타깃점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말씀 드리면 본사에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합니다. 리베이트를 일정 부분 제한하면 되는데,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 경쟁 양상 자체가 최근에 국지적으로 타깃 정책을 쓰는 것으로 아주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그런 것들을 중지했을 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가입자를 번호이동으로 뺏기는 부분으로 인해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은 어느 한 사업자가 기존에 해 왔던 관행 자체를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 결국 이동통신의 경쟁문화, 경쟁관행, 방식들을 3사가 같이 노력해서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통신사 간의 경쟁에 대해 과연 어떻게 관리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더 커집니다. 결국은 지금 과열을 주도하는 사업자를 우리도 타깃으로 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만이..., 불시에 그 범법이 언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365일, 24시간 매일 감시할 수 있는 행정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일시에 타깃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도사업자를 정해서 처벌하는 이런 행정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승복하십니까?

○ **윤원영 SK텔레콤(주) 마케팅부문장**

- 저는 이 업계의 문화 자체가 바뀌기 전까지는 시장을 주도적으로 과열시킨 주도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단독조사를 통해 제재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 드렸지만...

○ **허원제 부위원장**

-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SKT가 말씀하신 대로 보면 다른 사업자들도 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타깃이 되어서 우리만 처벌을 받느냐 하는 데 대한 불만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통위가 SKT를 겨냥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형희 SK텔레콤(주) 부사장**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에서 끊느냐에 따라, 어느 시점에 보느냐에 따

라 항상 주도사업자는 바뀌어서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저희들입니까?'라는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생각이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또 그러한 책임도 같이 있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4페이지 표에서도 보셨지만 그러한 흐름을 저희들로부터 끊기 시작했다는 그리고 이다음에도 같은 원칙 하에서 같은 뭔가를 이룰 것이다, 같은 규제환경이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이번 일을 계기로 업계 전체가 조용해지기를 기대합니다.

○ 허원제 부위원장

- 정말 우리가 지난번에는 임원고발이라고 하는, 이 일을 하면서 마지막에 써야 할 카드도, 너무나 시장이 과열되니까 그 카드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재연되니까 우리도 이 상황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굉장히 긴박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이번 경우를 보면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은닉한다든지, 또 분당 직영점에서 보낸 SMS 같은 메일 내용을 보면 굉장히 세련되고 다듬어진 문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분명히 본사에서 내려간, 제대로 문구를 정리할 줄 아는 분이 아주 잘 정리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내려 보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SKT가 주 타 것이 되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또 이런 자료들을 숨겨라, 지위라', 이런 식의 오더를 이렇게 내려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통신업계가 정말 정화되고 스스로 또 자제하고, 특히 SKT가 제일 큰 일종의 최고지배사업자인데 좀 더 큰 틀에서 시장 안정화를 하는 데 기여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아까 의견진술하신 내용에 대해 Q&A보다는 제 의견을 한 번 쪽 말씀드리고, 제 의견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3페이지 단독조사 대상 기간 선정과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사정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주장에 대해 한편으로 이해는 갑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동통신시장의 지원금 문제, 이것을 단말기유통법 제정, 시행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나 전례를 답습하지 말자, 잘못된 전례·관행을 끊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기준은 이랬다', '전례는 이랬다', 이런 논의는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단독조사 대상이다, 아니다 하는 판단기준을 3일이 아니고 한 달 동안 전체를 놓고 평균해서 판단한다면 저는 단말기유통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특정사업자에 대해 본보기로 제재를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이동통신시장 전체의 안정화를 기하는 것이 목적인데, 특정사업자가 과열을 보이고 있다면 빨리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 특히 아이폰 대란에서 봤듯이 주말이 취약 시기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가면서 계속 주말에 모니터링을 강화했고, 주말에도 전담반 직원들이 근무를 했습니다. 이러던 차에 사무처의 의견에 따르면 SKT는 17일, 18일, 전 주

말 그리고 1월 초부터 계속 그런 과열조짐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한 달 동안 이렇게 쭉 보고 단독조사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런 것은 의미가 없고, 굉장히 단기간 내 그것을 판단해서 단독조사 여부를 결정하고 단독조사에 들어가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왜 그러면 한 달 동안 조사를 하느냐? 3일 동안만 하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열이 됐다, 단독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이전부터 그런 조짐을 계속 보여 왔기 때문에 16일 이전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당분간 쿨다운됐다가 또 다시 16~18일 그 주말에 있었던 행위가 또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예방적 차원에서 한 달이라고 하는 조사 대상기간은 나름대로의 합리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과거 전례 답습을 안 한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조사대상기간도 수개월 이상 됐었고, 또 과열됐다고 판단한 시기에요 바로 조사하기보다는 그것보다 한참 지나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방통위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 의견은 조사대상 기간 선정이나 단독조사 대상사업자 선정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에서 "주로 번호이동을 가지고 과열 여부 내지는 단독조사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 하나와 또 "MNP도 전체 한 달 이상을 보고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셨는데 한 달 이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단말기유통법상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번호이동 건수만 보고 누가 과열을 주도했나, 아니면 지원금을 많이 썼느냐, 과거에는 이렇게 많이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열의 기준을 24,000건 이상 되면 과열이었다고 보았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번호이동 건수 그 자체 내지는 그 번호이동 건수도 24,000건, 그런 기계적인 판단은 이제 곤란하다, 앞으로 단말기유통법상으로 저희가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에 조사·제재한다고 할 때 이런 판단기준만 가지고 기계적으로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KT도 단말기 출고가 인하, 공시지원금 상향 조정, 선호단말기 추가 공급 등 이런 경쟁력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번호이동 실적을 올렸다고 주장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로지 과도한 지원금 지급 이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은 다른 회사도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자 간 위반 정도가 비슷해서 과열주도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었다는 것은, 제가 몇 차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과거의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 차원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조사하고 제재할 때 의결과정에서 나온 의견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계속 단말기유통법상에서도 유지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 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보면, 단독조사 착수 이후의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1월뿐만 아니라 2월에 보면 SKT 입장에서는 안정화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앞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는 단기간 내 판단을 해야 하고 조사도 최소한 단기간 내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파악한 바로는 SKT가 단독조사를 받는 기간 동안에 다른 사업자가 혹시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위반행위를 많이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고 아마 SKT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는 지속적으로 SKT가 단독조사하는 기간 동안에 그 어떤 다른 사업자라 하더라도 과도한 지원금 지급과 같은 과열을 유발하는 사례가 있으면 바로 또 조사하겠다는 이야기도 계속 해 왔는데 결국 SKT 단독조사를 통해 전체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 방통위의 강한 정책의지라고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시장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었다, 이런 데이터는 물론 피심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제했다는 것을 강조하

고 싶은 차원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이 사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공감하기는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9페이지 이야기인데, 기기변경 쪽의 샘플링보다는 번호이동 쪽에 집중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사무처에서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수집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물론 기기변경인 경우보다는 번호이동인 경우에 지원금이 많이 지급되니까 그쪽을 또 많이 주시했었을 텐데, 어쨌든 방통위 직원들이 가능한대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이런 분석을 해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방통위의 주 관심대상이 번호이동의 지원금 지급규모로 생각된다면 향후 또 이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니까, 물리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방안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듣고 생각나는 대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제가 말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 이형희 SK텔레콤(주) 부사장

-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말씀하신 역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수집에 더 협조하고 있는 대로 다 내놓는 방향으로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샘플링에 대해 제한된 조건 하에서 샘플링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수집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건에 대해 각각에 대해 보정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3:3:4의 비율로 모집단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 때 5:2:3 이런 식으로 샘플링 되어 나왔다면 그것을 가중치를 두고 역산하면 모집단에 가까운 샘플링의 방식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한 번 개선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다음 조사방법론이나 과열의 기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새롭게 앞으로 바꾸겠다는 부분은 분명히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바뀌었다는 부분에 대해, 공식적인 의사결정이나 통보에 대해 저희들이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정보가 제 기억 속에서는 메시지는 있었겠지만 저희들이 딱 이것이 그 메시지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월 상황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물론 번호이동 그 자체가 과열의 원인에 대한 상당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만 또 한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억울한 부분도 사실은 존재합니다.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단통법 이후에 많이 달라진 양상이, 각사들은 최대한 법을 지키긴 하되, 시장은 많이 가져오기를 원하는 쪽으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부터 생겼던 대표적인 양상이 재고단말기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15개월 이상 단말기는 보조금을 얼마를 주더라도 법에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고단말기 이용을 12월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2월에 재고단말기를 별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말기를 놓아두고 다음 달에 써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재고단말기 15개월짜리를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재고단말기의 수량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 12월에 여러 가지 경영목표 상황에서 12월에 하는 것보다는 해를 넘겨서 그 다음 달에 하자는 관점에서 12월에 그 재고단말기를 주로 할인판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은 저희들이 번호이동이 마이너스 15,000건 정도 되었는데 12월이 되니까 25,000건 이상으로 10,000건 이상 더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모든 시장이 다 건전하고 다 별 이상이 없었다는 전제로 놓고 보자면, 저희

들이 특별히 더 마이너스가 많았던 것은 재고단말기를 저희들은 안 썼고 경쟁사는 썼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12월에 쓰지 않았던 재고단말기가 1월에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은 12월보다 상대적으로 저희들에게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쟁사는 재고단말기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쁠 수밖에 없고, 분명히 큰 대목에서 10,000건 이상의 내용이 그러한 재고단말기와 또 하나 더 보자면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이 그 당시 공급난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수요보다도 공급이 부족했고 아이폰에서 회사별로 돌아가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1월에 공급 받았고, 다른 회사는 그것보다 일찍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폰 재고 이퀄(equal) 아이폰 고객 확보로 연결되는 그러한 상황이 또 1월에 있었음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월 초 상황 같으면 특히 아까 사무국에서도 1월 초에 SKT가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4페이지 <표>에 보시면 1월 초에는 다른 회사, 노란색으로 표시된 회사가 평소보다 더 많이 올라갔음이 보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간에 1월 초에는 노란선에 표시된 회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은 그 부분은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아주 간단히 2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꾸 번호이동이 어느 회사로 얼마큼 있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인디케이터(indicator)가 되어 왔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원금을 위법적으로 얼마큼 지급했느냐, 이것이 좀 더 직접적인 인디케이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방통위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를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과거에는 '과열주도사업자'라는 말이 있고 '과열주도사업자 선정기준'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것은 대부분 2개 이상 내지는 3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나중에 제재 수위를 정할 때 과열주도를 한 사업자에게 가중해서 제재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아이폰 대란 이후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되면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연초로 오면서 아마 방통위에서는 계속 단독조사 이야기를 강조했을 것입니다. 시장 전체가 과열이 되면 3사를 전부 다 조사해서 과열을 주도한 곳을 가중하겠다, 이 소리가 아니고 조사 자체를 단독으로 하겠다, 그 이야기는 단독 조사를 하는데 과거처럼 조사대상기간을 6개월씩 하고 조사기간도 2개월, 3개월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논의되는 많은 사안에 대해 방통위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방통위가 단독조사 또는 단기간에 어떤 결정 내지 판단을 할 것이라는 점을 이번에 다 같이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저도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면 지금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단말기유통법이 생긴 이후에 과거의 조사 형태, 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한 달 기간 동안 실태점검을 하고 그동안에 이통3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표본을 잘 갖추어서 그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사실조사에 들어가고, 사실조사 결과가 나오면 위반율과 위반금액을 점수화해서 과열 주도사업자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해 중한 처벌을 하고 이러한 매커니즘은 사실은 단말기유통

법이 새로 생기면서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단말기유통법의 가장 많이 변한 모습은 지금 계속 이기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주 짧은 기간에 이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잘못을 한 사업자가 발견이 되면 짧은 기간 동안 바로 조사에 들어가서, 그 경우에 단독조사 판단여부도 아주 짧은 기간의 것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 설명자료에 있는 것처럼 과거의 선례가 이렇고 과거의 기준이 이랬었다는 것은 지금 거의 대부분 바뀐 상황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형희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의 조사된 표본과 관련해서 대상, 능력, 인원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조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조사가 되고 난 다음에 보정하는 방법도 있었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접근하면 아까 말씀하신 표현 그대로 이러한 행위는 일률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타깃점 위주로 일어나고 있어서, 위법행위가 있다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나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으로 의심되는 곳을 위주로 조사대상으로 삼아 저희가 조사를 나갑니다. 그러면 기껏 그런 곳에 나가 조사한 것을 전 유통점 수로 나누어서 평균을 내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대한 위반행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위반율이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비록 일부 타깃점에서라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면 그것은 그 자체로 중대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시를 내렸는데 지시를 듣지 않은 데가 PS&M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PS&M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주점과 춘천 명동점에 조사를 나갔는데 전산으로 다 차단하고 또는 일부 내용을 은폐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이 그렇다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위반율을 산정한다고 한다면 위반율이 당연히 더 높아져야겠지요. 사실 이런 것들이 다 플러스·마이너스 되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의 조사방법에 그렇게 큰 문제는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SK텔레콤 측에서는 “우리는 1월 21일 이후에 단독조사가 진행된 이후에 매우 자숙하고 과도한 지원금이나 또는 리베이트가 지급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해 왔고 실제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기에서 일일이 다 거론할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가셔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수치로 나타난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여전히 1월 20일~30일까지 기간 중에도 1일 리베이트 수준이 상당히 높았던 기간이 지속이 됩니다. 리베이트에 관해서는 지금 3사 방통위와 협력해서 서로 과도하게 높았을 때는 서로가 견제를 하면서 또 저희 지시에 잘 따르면서 그렇게 2월 이후에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신규모집금지에 관해서 아까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질문 하거나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조치와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사실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오늘..., 이형희 사장님이시지요? 총괄이신데요. 김용섭 변호사님이시지요? 두 분이 설명을 굉장히 성의 있게 해 주셨고 많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시정

조치 관련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실태조사, 현장조사 이후에 시장이 정상화·안정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긴급·위급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든가, 여기 자료를 보면, 다른 시정조치만으로 이용자 피해방지가 곤란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1월에 방통위에서 과열주도사업자로 선정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로 돌아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인력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할 때 점검을 해서 시장을 겨우 이렇게 정상화시킨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되돌아간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신규가입 금지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원들끼리 논의해 봐야겠지만 그런 점이 있다, 실태조사를 안 했더라면 계속 갔을 것이고 문제가 커졌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흘간의 상황을 보고 빨리 판단해서 과열 주도사업자를 선정·결정했고 단독조사를 결정해서 갔기 때문에 조기에 안정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정조치를 만드는 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정책규제기구의 많은 사전 주의, 경고와 시정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자와 다르게 그냥 혼자서만 갔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방통위가 정말 더 이상 책무를 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껴안거나 감정적인 대응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걱정스럽고 앞으로 정말 이렇게 하면 큰 일 나겠다 하는 위기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전산시스템 삭제·은폐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유사·위반행위, 조사방해 행위가 업계에 만연된다면 큰일입니다. 앞으로도 유통시장의 단말기 유통거래를 기록하는 전산시스템에 관해서는 손대지 못하도록, 삭제·은폐하지 못하도록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전혀 새로운 사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려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시정조치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수위는 말할 것 없이 재발방지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히 근절시키기는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방통위 사무처에도 이제는 시장 감시반, 조사과에 인원이 확충되고 거기에 경찰관도 파견 받아서 종전보다는 훨씬 더 엄정하게 감시·감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여튼 어렵지만 엄정하고 단호하게 일벌백계하지 않을 수 없다, 단독조사에 들어간 취지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시정조치에 관해서...,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10페이지에 이번이 두 번째라고 판단하신 것이지요?

○ **이형희 SK텔레콤(주) 부사장**

- 예,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다음번에 SKT가 똑같은 과도한 지원금 지급 위반으로 이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카운트가 제가 생각하는 카운트와 다른 것 같아서 그것은 물론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있을 때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혹시 카운트라고 할 때 스트라이

크가 2스트라이크인지 1스트라이크인지에 따라 상황 판단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이 시간 이후에 SKT가 사무처와 이 조항에 대해 한 번 꼭 서로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이 숫자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의 '현저성' 문제인데, 다른 시정조치만으로 이용자 피해방지가 곤란한 경우, 현저하다는 말을 다른 판례나 사례를 들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우를 통해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 여러 가지 시그널을 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현저성'을 폭넓게 생각하고 싶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사기간 중에 발생한 피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이용자들의 피해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12페이지를 보면, 아이폰6 대란과 이번 조사에서의 초과 지원금, 리베이트를 비교했는데 통신사업자도 그렇고, 단말기 제조업체, 소비자, 유통망도 그렇고, 이동통신시장이 얼마나 다이내믹하게 움직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심결을 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계량적인,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해야겠지만 너무 수치 위주의 기계적인 판단은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13페이지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사실상 최초의 단독조사이고, 특히 단말기유통법 제정, 시행 이후의 사례로 따지면 더더욱 그렇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신중하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검토해 왔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통망, 소비자,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앞에 영업정지 처분을 빼고라도, 방통위에서 주로 논의하는 대상은 이동통신사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치사슬처럼 묶여 있는 산업 전반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용자, 소비자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여기에서 써 주신 내용, 무엇을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저희 방통위는 규제기관으로서 이통사에 대한 규제 차원에서만 이러한 사안을 보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폭넓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혹시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 김용섭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 3회 위반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무국과 법리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하자는 말씀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 요건 중의 하나 '현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폭넓게 해석하고 싶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폭넓게 해석하시면서도, 이 법 규정 자체 자체가 '3회 위반'과 '이용자 피해방지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로 병렬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뒷부분에 대해 해석함에 있어서 그런 위반의 정도가 앞부분 정도로 중하다고 보이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저성에 대해서 판단할 때도 거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해석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추가 의견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것 질문할 것 없으십니까? 제출하신 의견서에 있는 것을 확인하면,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조사방해와 관련해서, PS&M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 의견서에는 그와 같은 조사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기는 조사방해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입장에 있어 차이가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 **하성호 SK텔레콤(주) CR부문장**

- 지금 기술된 조사방해가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틀어서 그렇게 말씀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의견서에 제출한 부분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PS&M의 경우, 사용하고 있는 T-Key+(SKT의 영업전산시스템)에 조사를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데 그것을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시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까?

○ **하성호 SK텔레콤(주) CR부문장**

- 이번에 저희가 조사 내용에서 파악한 바로, 지금 T-Key+라는 것은 PS&M의 전체적인 전산 운영 시스템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소나기 1, 2(조사방해 전산프로그램)를 작동했다는 것입니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 **하성호 SK텔레콤(주) CR부문장**

- T-Key+에 있는 아까 말씀하신, 일부 창을 안 보이게 하는 기능들은 이번에는 작동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 **하성호 SK텔레콤(주) CR부문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종전에 주장하시는 것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입니까?

○ **하성호 SK텔레콤(주) CR부문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 이용자정책국장님! 지금 그 부분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나중에, 의견진술인이 퇴장하신 다음에 논할 수도 있지만 지금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의견

진술인이 계신 자리에서 논의를 진행하겠는데, 우리는 작동했다고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작동했다고 보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 조사관이 실제 앞에서 말씀하신 광주와 춘천 지점에 나가서 조사를 했었고, 그 당시에 PC상의 자료를 우리가 보기 위해 협조를 요청했을 때, 예를 든다면 메신저가 차단이 됐다거나 전원이 꺼졌다거나 했었고 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매뉴얼을 확보해서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내용을 조사한 결과, 그 안에 방통위의 조사에 대비한 여러 가지 내용이 이미 담겨져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 추후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황 증거상 다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작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이 되었는지는 저희들이 미처 확인은 못 했지만 제반의 정황 증거로 볼 때 분명히 작동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나 입증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그쪽의 확인서를 받았거나...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관련자들로부터 확인서 또는 진술서를 다 확보하고 또 KISA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다 확인하게 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시인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실제 어떻게 작동되었는지, 또는 실제 현장에서 당시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주고받은 상황에 대한 메시지, 커뮤니케이션 내용들을 다 확보했습니다.

○ 하성호 SK텔레콤(주) CR부문장

-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조금 추가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 하성호 SK텔레콤(주) CR부문장

- 아까 말씀하신 기술적인 부분에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PC가, 커뮤니케이터가 꺼지고 메일이 차단되는 부분들이 PS&M에서 일어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사방해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것은 PS&M이 방통위에서 조사가 나오니까 방어 차원에서 자체 서버에 있는 것들을 막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의 기능이 T-Key+라는 전산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산 차단 행위나 이메일 차단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충분히 사과를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형희 SK텔레콤(주) 부사장

- 잠깐 보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방해에 대한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 그런 일들이 특히 PS&M 쪽에서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메일, 메신저, 기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건, 한 건 거기에 대해서 따지기가 사실 뭐해서 총론적으로, 저희들이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 한 건, 한 건 이것은 했고 저것은 하지 않았고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결론적으로 저희 조사관들이 나갔을 때 PS&M의 춘천 명동점과 광주지점의 소위 서버가 다운이 됐고 그 과정에서 자료를 볼 수 없게 됐고 그런 과정은 의도적으로 그 자료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그 주체가 PS&M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 그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것입니까?

○ 하성호 SK텔레콤(주) CR부문장

-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이 아까 말한 T-Key+ 시스템 자체에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 하성호 SK텔레콤(주) CR부문장

- 그것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PS&M의 자체 기능이고 T-Key+의 기능은 아닙니다.

○ 최성준 위원장

- PS&M의 자체 기능입니까?

○ 하성호 SK텔레콤(주) CR부문장

- PS&M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서버에 의한 기능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왜 그런 작동 여부와 관련해서 PS&M 직원과 SKT의 직원 사이에 메일이 오고 가지요?

○ 하성호 SK텔레콤(주) CR부문장

- 그것은 PS&M이 당시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아마 조사받는 실무자들 차원에서는 그 당시 조사 진행상황을 아마 실무적으로 보고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어느 정도의 화면이 없어져야 하는지, 제외해야 할 항목이 뭔지 서로 그런 것을 이메일로 주고 받던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자료를 제시해 드릴까요?

○ 하성호 SK텔레콤(주) CR부문장

- 아닙니다. 이메일을 주고받고 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커뮤니케이터가 꺼지는 것과는 다른 일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PS&M에서 운영하는 것이 T-Key+라면서요?

○ 하성호 SK텔레콤(주) CR부문장

- 예, T-Key+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체 메신저나 메일 서버는 또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T-Key+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자체 메신저와 메일 서버에서만 작동이 가능한 것입니까?

○ 하성호 SK텔레콤(주) CR부문장

- T-Key+는 영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비고란에 페이백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하성호 SK텔레콤(주) CR부문장

- 비고란을 운영하는 것은 T-Key+의 기능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안 보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꾸 분리해서 어떻게 논의할 수 있습니까?

○ 하성호 SK텔레콤(주) CR부문장

- 제가 말씀 드린 것은 T-Key+에서 화면을 안 보이게 하는 기능은 이번에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 이형희 SK텔레콤(주) 부사장

-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메일 등 다 그렇게 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고, 커뮤니케이터가 메신저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각각 다른 종류의 연락수단들이지요. 메신저 그 부분들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희들이 말씀 드린 것입니다. T-Key+에서 메모란을 숨기는 기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간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페이백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것을 메모해 적는 기능인데 작년 단통법 이후에 아마 법인형 대리점 또는 SKT든 KT든 LGU+든 혹은 하이마트 이런 종류의 큰 대형 법인형 매장에서는페이백이 다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사무국에서도 그렇게 파악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 최성준 위원장

-페이백이 언제부터 사라졌다고요?

○ 이형희 SK텔레콤(주) 부사장

- 단말기유통법 이후에 다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자영업자들은 아직 까지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인형에서는페이백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세무 이슈도 있고, 특히 요즘 또 단말기유통법 이후에 패러다임이 많이 바뀐 부분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관리나 이런 여러 가지 규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옛날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 하에서는 SKT만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업계 전부에서, 대형 법인형에서는페이백을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페이백이 사라졌다면페이백 부분에 대해 관리할 필요조차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페이백 부분은 사무국에서는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사무국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피심결인께서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 21쪽에 의하면 '소나기 1, 2 는 과거 단말기 보조금 조사가 있을 경우 지급한페이백 내용을 숨기거나 삭제하는 조치'라고 이미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다만, "15년 1월에는" 이러면서 '사용할 이유가 없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본적으로는 그 기능이 있는 것이고, 다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하시는데, 문제는, 이것에 대한 진실은 다른 문제이기는 하나 여하튼 저희들이 파악한, 조사관들이 현장에서 파악한 제반 증거에 의하면 이 내용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작동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자료를 접근 또는 제출받지 못한 이유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만약에페이백 내역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사실 그 자료를 숨길 이유가..., 여기에서 보면 '페이백 내역을 숨기거나 은닉 또는 삭제'하는 기능이라고 분명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기능들이 작동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하는 동안에 그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은 제반 정황증거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무국 입장에서는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형희 SK텔레콤(주) 부사장

-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었던 것은 아마 몇 년 전부터의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페이백이 업계 안에서 많이 존재하였던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어느 특정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업계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이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의 변화, 각종 규제 내용의 변화 등등으로 인해 10월부터는 그 필요성이 없어졌다, 실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있었다는 것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고 10월 이후에는 그러한 것을 운영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지금 PS&M은페이백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번에 조사가 나갔을 때 전산이 다운되어서 그페이백 자료를 보지 못하도록 했을까요?페이백이 없었다고 어떻게 자신 있게 말씀 하십니까?

○ 이형희 SK텔레콤(주) 부사장

- 저는페이백은 없었다고 단정합니다. 지금 규제의 내용이...

○ 최성준 위원장

- 페이백 내역을 숨기거나 삭제하는 조치가 바로 지금 T-Key+에 있는 소나기 1, 2인데 그것이 이번에 작동이 됐다고 보이고, 작동이 됐다고 보이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신다는 것은 PS&M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단정적으로 “그런 법인형의 대리점에 있어서는페이백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 윤원영 SK텔레콤(주) 마케팅부문장

-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T-Key+는 PS&M의 동일 매장에서 고객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업전산이고, 아까 조사관이 갔을 때 섰다운 됐던 부분들은 사내 직원들이 공유하는 이메일 시스템, 이것은 별도 서버입니다. T-Key+ 영업전산과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마 조사 갔을 때 그것이 멈췄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것은 약간 다른 사안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이 멈추면 T-Key+는 볼 수 있습니까?

○ 윤원영 SK텔레콤(주) 마케팅부문장

- T-Key+와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니까 그것이 멈추면 T-Key+는 볼 수 있었겠네요? 하지만 저희는 안 돼서 못 봤습니다. 이용자정책국장님, 봤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제가 알기로 T-Key+ 자체를 다 중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T-Key+의 프로그램 자체가 얼마큼 관여가 됐는지 모르지만 PS&M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SKT ICT기술원을 통해서 계약이 체결되고 프로그램이 개발되지요?

○ **하성호 SK텔레콤(주) CR부문장**

- 예, 아까 말씀 드린 T-Key+ 자체 영업전산은 다른 대리점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자산 문제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각 대리점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저희가 일일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내역은 모른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별도의 문제로 치고,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보면 전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메신저만 차단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T-Key+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어서 저희가 보면 페이백은 없었다고 하니까 페이백이 없는 것이 짝 나왔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 **하성호 SK텔레콤(주) CR부문장**

- T-Key+가 차단이 됐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 **윤원영 SK텔레콤(주) 마케팅부문장**

- 완전히 서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연동되지 않습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들이 실제로 자료를 조사하려면 결국 가입자의 정보에 관한 모든 것에 다 접근해야 하는데, 그 가입자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T-Key+이고 그 자체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차단한 것입니다. 즉, 메신저 등은 직원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일종의 별도의 수단이고, 메신저의 내용 또는 주고받은 내부 통신문에 의하면 분명히 T-Key+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련된 또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정황들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실제 이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명히 작동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현장에 직접 조사 나갔던 조사관이 뒤에 배석해 있습니까?

○ **최성호 통신시장조사과장**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T-Key+는 가동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T-Key+라는 프로그램 안에 은닉·삭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T-Key+가 가동이 됐기 때문에 전산 서버실에 갔을 때 매뉴얼에는 있지만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 저희는 '왜 이것을 볼 수 없느냐?' 했더니 '사라진 이유는 잘 모르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저희가 확보한 그쪽 내부 메일에 의하면 '사라진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다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런 사실은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메신저나 2014년 자료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이 조사가 나왔을 시에 자동적으로 가동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전산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았겠냐고 볼 수 있는 내부의 그런 메일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T-Key+가 작동이 됐고 그 T-Key+ 안에 있는 은닉·삭제 기능이 작동됐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볼 수 없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PS&M이 SKT에 그러한 사항을 보고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어느 만큼만 보여줄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 서로 협의한 메일을 저희가 확보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제가 조금 표현을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정정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의견이 어떠십니까?

○ 하성호 SK텔레콤(주) CR부문장

- T-Key+ 자체는 저희 시스템이니까 운영이 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 최성준 위원장

- 일부 화면이 자동적으로 삭제되도록 되어 있는 그것이 작동됐다는 것이지요?

○ 하성호 SK텔레콤(주) CR부문장

- 일부 화면이 예를 들어 조사가 나왔을 때 안 보이도록 하는 그 기능은 이번 기간에는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작동하지 않았습니까?

○ 하성호 SK텔레콤(주) CR부문장

-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아까 총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영망에 대해서는 페이지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영망에 페이지를 제공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직영망은 그 전산을 동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서버 운영자가 조사관에게 해당 화면에 대해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는데 중략하고 “현재 오픈되어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보이지 않도록 삭제하였기 때문에…” 메일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까?

○ 하성호 SK텔레콤(주) CR부문장

- 그 부분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도 드렸는데 조사가 나왔을 때 조사관 분들이 봤을 때, 저희가 평소에 운영하는 운영서버가 있고, 그다음에 운영서버를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평소에 개발을 계속 할 수 있는 개발서버가 있습니다. 개발서버는 수시로 메뉴도

바꿀 수 있고 새로운 기능을 넣을 수 있도록 개발용으로 되어 있는 서버입니다. 조사관이 나왔을 때 그 개발서버로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은 왜 지워졌느냐?’ 그런데 개발서버에서는 형상관리를 하다 보면 어떤 부분들이 지워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지워졌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던 것이고, 말씀하신 답변 부분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고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사관들이 캡처한 화면들도 저희가 어떤 화면인지, 정말 무엇인지 봤습니다. 그것은 메뉴 중 요금의 정산에 관련된 기능, 요금 계산한 기능, 이런 화면들이 있다가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개발하다 보면 어떤 기능은 없애자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내용을 봤을 때에는 요금기능인데 그것은 굳이 저희가 은폐할 이유가 없는 화면들이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중간에 개발단계였다는 것입니까?

○ **하성호 SK텔레콤(주) CR부문장**

- 현재 사용하고 있지만 또 새로운 기능 추가를 위해서 별도의 똑같은 기능을 가진 개발용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저희 조사관이 나가서 개발용 시스템을 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보면 되는 것이지요.

○ **하성호 SK텔레콤(주) CR부문장**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직접 그 안의 소스코드를 보면 사용하는 시스템이 갑자기 중단이 된다면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나 하는 것을 똑같은 형상을 가진 개발용 서버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이형희 부사장님께서도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나 하면 타깃점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지시가 내려갔는데 PS&M은 말을 안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곧 뭐냐 하면 과도한 리베이트를 내려 보내서 결국에는 공시 초과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했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적절한 제재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이폰6 때도 PS&M에 가서는 저희가 1건도 적발한 것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에 광주, 춘천 명동점에 가셔도 1건도 적발한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페이백이라는 것을 떠나서 공시된 지원금을 초과한 것을 1건도 적발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사에서 지시를 안 따랐다고 해서 제재를 한다는데 제재할 이유가 없지요. 잘 따라서 공시된 지원금만 잘 지급하고 있고 적발 과정에서 1건도 적발이 안 된 업체인데 그런 업체를 왜 제재합니까? 오히려 상을 주어야지요.

○ **하성호 SK텔레콤(주) CR부문장**

- 아까 총괄께서 말씀하신 PS&M의 대리점이페이백을 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직접 운영하는 직영대리점은페이백을 주지 않는데 그것은 다른 회사들도, KT도 그렇고, LGU+도 그렇고,페이백을 할 수 없는 구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PS&M의 여러 대리점 중에 직영대리점이 아닌 위탁판매점들은 PS&M이 리베이트를 주게 되니까 그 리베이트 받은 것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일부를페이백으로 주겠다”고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산에 기록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그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알아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전산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PS&M의 직영대리점에서는 전산에 기록이 필요한페이백을 저희가 10월부터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굳이 그 창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 그 기능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기능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자료 가지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것 없으면 의견 진술인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이형희 SK텔레콤(주) 부사장

-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말씀하십시오.

○ 이형희 SK텔레콤(주) 부사장

- 오늘 여러 가지로 많이 착잡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자리가 사실은 없었어야 하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에 대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두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도 논란이 있었지만 단말기 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논란 끝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라는 이름으로 수립되어 지금 현재까지 이르고 있지만 여전히 오늘과 같이 논란이 계속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의 안정적인 정착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각 통신회사 차원에서는 가입자를 확보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결국은 보조금, 단말기 구매가격이기 때문에 불법 과열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법과 규제의 틀을 벗어나는 행위들을 수시로 해 왔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모든 불법행위의 원인을 경쟁사에 다 돌리고 있었습니다. 소위 시장 1위 사업자라고 하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였음을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이번 심결을 계기로 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3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번 SK텔레콤(주)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각종 단말기 지원금과 관련된 이슈에서 적극적이면서도 모범적으로 그리고 여태까지와는 달리, 다른 기업의 자세와 상관없이 단말기유통법과 정부정책이 지향하는 바를 선도적으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불법지원금의 수단으로 주목되고 있는 리베이트 수준에 대한 것입니다. 리베이트 수준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방통위의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침에 적극 호응해서 리베이트 정산 시스템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고 집행하는 제도적 그리고 시스템적인 장치를 내부적으로 구축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계가 모두 이러한 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알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업계 전체가 리베이트가 좀 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는 그러한 모범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이러한 단말기보조금을 둘러싼, 지원금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에 원인이 되는 것, 비이성적인 경쟁의 원천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결국 시장점유율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도에 많이 났습니다만 어제 저희 회사에서는 시장점유율 경쟁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50.01%라는 한계 상황 속에서 어차피 떨어질 점유율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속에서, 점유율 0.01%, 점유율 0.1%를 가지고 이렇게 아웅다웅 싸움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지금 이러한 이전투구의 양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화된 시장에서 무의미한 시장점유율 경쟁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경쟁이 아니라 전쟁의 양태에 이르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가입자 수' 위주의 경쟁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통신시장에 질적 성장을 위한 경쟁을 하는 경쟁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들 알고 계시는 통신업계 앞에 펼쳐져 있는 IOT나 빅데이터, 클라우드, 핀테크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분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ICT 생태계가 더 살찌워질 수 있는 그러한 무수히 많은 기회가 있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무수히 많은 기회를 누가 먼저 어떻게 가져갈까, 이러한 종류의 경쟁을 저희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경쟁의 방향이 아마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업계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적으로도 더 좋은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가지 약속 드렸고, 오늘 약속 드리는 부분이 각 개별적인 경우 최근에 계속 제가 해 오던 이야기입니다만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고 회사의 전사적인 그러한 방침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임기응변으로 드리는 약속이 아니고, 이미 한 가지에 대해서는 실천을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논의 중에서 마음 많이 상하시는 위원장님의 모습도 봤고, 다른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 그리고 때로는 질책,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그리고 앞으로 고쳐나갈 부분, 더 빨리 바른 방향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약속하신 것들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SKT가 앞장서서 이동통신시장의 안정화, 또 더 나아가서는 가계통신비 인하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SK텔레콤(주) 의견진술인 퇴장)

○ 최성준 위원장

- 이용자정책국장님, 시정조치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SKT에 대한 제재방안입니다. 첫 번째 시정명령입니다.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보고토록 명령하고자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과징금 부과입니다. 법 제15조에 따라 법 위반행위의 정도, 가입유형 등을 고려하여 관련 매출액에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추가적인 가중사유, 즉 위반행위의 지속과 조사방해 2개를 각각 20%씩 적용·합산하여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모집금지입니다. 법 제14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지난 아이폰6 관련 제재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지속된 점, 수차례의 주의 및 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시정되지 않았던 점, 단독조사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계속되었던 점, 위법행위 재발 가능성이 있는 점 그리고 다른 사업자도 위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등 제1호부터 제6호의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며, 위반행위의 정도, 이동통신 시장여건, 제재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모집금지를 <제1안>은 부과하지 않거나, <제2안>은 7일간 부과하거나, <제3안>은 14일간 부과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원의 형사고발입니다.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차별적 지원금 지급유도 행위 관련 SKT 영업담당 임원에 대해 <제1안>은 형사고발하지 않거나, <제2안>은 형사고발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사방해 관련해서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조사방해 전산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고도화 총괄 그리고 E-Mail을 통해 조사자료 삭제를 지시한 SKT의 ICT기술원장과 해당 직원에 대해 위반행위가 1회에 해당하여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점에 대한 제재방안입니다. 먼저 시정명령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31개 유통점에 대해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령하고자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입니다. 법 제2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31개 유통점에 대해 각각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조사방해 관련해서는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조사현장 접근을 거부한 3개 유통점 그리고 조사자료 삭제를 지시한 1개 대리점, 조사방해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한 1개 대리점 및 그 대표자에 대해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3>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심결인이 제출한 의견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붙임4>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은 기타 <붙임>으로 참고자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정조치안에 대해 차례대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시정명령 중에서 '업무처리절차 개선' 여기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조사방해 전산프로그램 운영'을 가지고 후반부에 많은 논란이 됐지만 어쨌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지금 <붙임2>에 세부적인 시정명령안이 나와 있고, 그 중에 <붙임>자료를 보시면 업무처리

절차는 일단 개략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가입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객관리 자료가 적법하게 기록 및 관리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라고 되어 있고, 그동안 위원회에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조사를 나가보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자료가 은닉 또는 삭제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세부적인 시정명령안을 잡을 때에는 SKT에 대하여 특별히 이 부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자 하며, 만약 하나의 항목조차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별도의 제재도 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행계획서도 제출받고 이에 대한 점검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저희가 구체적으로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도 이것보다 상세히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SKT 쪽에서 그것을 받아서 스스로 이루어러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앞으로 하겠다고 제출하면 그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시정명령이 되는 것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또 실제적으로는 저희들과 실무적으로 다 협의를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은 당연히 만들지 않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기능이 있다는 것은 아까 인정을 했으니까 '해당 부분은 삭제하겠다', 그런 것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소스코드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과연 저희가 강제력이 없는데 현장에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는지가 걱정이 되니까 그 시정명령 중에 저희가 점검을 갔을 때에는 '소스코드를 보여주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내용도 같이 들어가서 저희가 실질적인 점검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정명령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징금 부분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과징금에 대해 다른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분도 다 같은 의견이시면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있는 것처럼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규모집금지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의견을 나누면 아까 의견진술 과정에서도 논의가 됐

지만 지금 보고한 것에 의하면 제1호부터 제6호의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이 판단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고, 그다음에 그와 같이 판단했을 경우에 <제1안>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2안>과 <제3안> 중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재방안 수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수준이 높은 것은 형사고발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효과 면에서는 회의가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종전에는 영업정지였습니다. 그런데 단말기유통법에서 신규모집금지라는 것은 영업정지를 굉장히 축소한 것 같습니다. 영업정지는 기기변경과 신규가입, 번호이동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금지인데, 기기변경이 영업내용 중 몇 %, 몇 대 몇 정도로 구성되니까? 50:50은 되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일단 신규 외에는….

○ 김재홍 상임위원

- 기기변경과 신규가입, 번호이동이 대체로 영업내용에 몇 대 몇이 되는 것입니까? 50:50이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50을 넘긴 경우도 있고, 50:50… 그러면 이 단말기유통법상 신규모집금지로 축소된 종전의 영업정지는 절반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만 하더라도 통상 영업정지하면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는 미래부까지 합해서 45일 영업정지시킨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시장이 냉각됐고 전국의 판매유통인들도 “이것은 민생 문제다, 먹고 살 수가 없다”며 정치권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말기유통법에서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그 절반의 의미를 담은 신규모집금지이기 때문에 작년에 통상 1주일씩 했다면 그 배로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토론하는 것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난번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영업금지시켰을 때 기변은 허용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기변은 허용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기변은 그때도 허용했었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기변은 되고, 010 신규와 번호이동만 금지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지금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사실상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법에 이용자의 신규모집금지를...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김재홍 위원님께서서는 전의 것과 다른 것처럼 말씀하셔서...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김재홍 위원님께서서는 효과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때의 영업정지도 전부 다 신규모집금지만이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법률상의 용어는 '신규모집금지'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1주일씩 했던 것이...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 전에 45일 했던 것도...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전부 다 기변을 금지한 적이 없네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기억으로는….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을 분명히 잘 확인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맞습니다. 법률적인 용어는 신규모집금지이고, 보통 우리는 영업정지라고 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조사관 이야기해 보십시오.

○ 최성준 위원장

- 이야기해 보십시오.

○ 임서우 통신시장조사과 사무관

- 미래부에서 45일 제제한 것은 영업정지로서 기변까지 포함하는 영업정지였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미래부가 한 것은 그것이고요.

○ 임서우 통신시장조사과 사무관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영업정지한 것은 영업정지가 아니고 정식 명칭이 '신규모집금지'로서 번호이동과 010 신규에 대해서만 정지한 것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압니다. 차이를 물어본 것인데….

○ 최성준 위원장

- 잠깐만요. 정리하면 지난번에 45일씩 한 것은 미래부에서 시정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부과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업정지이고, 시정명령을 어겼을 때 한 것은 영업정지로서 그것은 기기변경까지 금지하는 것이고, 과거의 '과다한 보조금 지급', 지금의 '과다한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내렸던 것은 전부 신규모집금지이고 기기변경은 허용이 되는 것이었다고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 **임서우 통신시장조사과 사무관**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정명령 위반과 이것과는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제재의 효과, 실효성이 담보되려면 단순 반복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극약처방하면 안 되겠지만 이다음에는 재발방지가 어려울지 모릅니다. 시장조사과 인원이 많아지고 경찰관이 파견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담보하는 제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하나 걸리는 것은 판매유통인들의 민생 문제입니다.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조사방해..., 일선의 대리점·판매점들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통신시장의 거래질서, 공정성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유통인협회 내부에서도 논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군다나 이 신규모집금지는 그 기간에 SKT로 하여금 기변을 할 수 있도록 50%를 터주는 것 아닙니까? 일선 유통·판매인들도 그 점은 이해해서 함께 자율규제라고 할까, 자율협의를 해서 일선 대리점·판매점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자율결의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부담은 되지만 신규모집금지는 실효성이 있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5만개 이상 된다는 판매·유통인들, 그분들이 작년부터 정치권에도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압니다. 고민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대로 통신시장을 바로잡는데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도 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미래부가 작년 12월에 45일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그래서 아마 제가 전기통신사업법, 몇 조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거기에는 '사업정지명령'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정지 중에 영업만 정지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상 단말기보조금의 과도한 지급을 통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규정이나 단말기유통법상 제13조에 나와 있는 것은 똑같이 신규모집금지를 해 온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미래부가 내린 영업정지와 저희의 단말기지원금 과다 지급으로 인한 제재조치 중 신규모집금지는 법적근거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아까 피심인들과 많은 논의를 한 것 중의 하나가, 저희가 과거에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 제도상 운영되어 왔던 시장 과열 판단기준이나 여러 가지 조사기간과 처음으로 차이를 두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대상 기간 선정이나 그 당시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는 저희가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약간의 과도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신규모집금지는 아까 피심인 측과도 의견교환이 있었지만 향후 시장에 주는 시그널적인 차원에서, 예방적인 효과를 많이 보아야겠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7일간 부과하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앞서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에도 법 위반행위와 이에 대한 제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 법과 제도의 정비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차별로 인한 권익침해 행위의 근절이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동통신 사들이 현재와 같은 가입자 중심의 시장점유율 유지에 기초한 후진적 마케팅 전략이나 경영행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단말기유통법의 안착과 이동통신시장의 선진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방송통신위원회 시정조치안에 대한 SKT의 소명과 반론에도 불구하고 안전에 적시된 조사결과는 적절하고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지난해 아이폰6 대란과 비교해 보면 시장 과열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장이나 이용자 피해 수준 측면에서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으나 안전에 적시되어 있는 대로 지난 아이폰6 관련 제재 직후에 단기간에 재발되었고,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하는 연초에 발생했다는 점, 특히 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인 SKT가 시장 교란과 과열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위원회의 수차례의 시정권고 조치를 무시하고 위법행위를 계속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SKT의 위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해 개인적으로는 신규모집금지 1주일 정도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심결을 계기로, 사업자는 단말기유통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또 위원회는 강력한 제재를 하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원제 부위원장

- 이번 사안에 대한 문제점은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판단만 하겠습니다. 저도 <제2안>을 지지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의견이 합일되게 모아지지 않습니다만 다수의 의견이 여러 가지 정황상 7일 정도의 신규모집금지면 이번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기는 합니다만 또 아주 강하게 하는 것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 김재홍 상임위원

- 제가 정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2013년 미래부가 45일씩 영업정지를 했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부 정책당국의 권위가 쇠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 드리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와 권능을 포기하면서 7일간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업계가, 시장이 이해해야 하는데 또 국민 여론이 이해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할 것이고, 재발방지하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담보되어야 하겠습니까? 아까 SKT의, 이형희 총괄이면 사장급인데, 부사장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심결장에 사장급이 참석한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형희 총괄이 약속한 것, 회사 차원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실행이 저는 담보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만큼 고위 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그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방통위가 위신과 권능을 버리고 조금 낮춰서 7일간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형희 총괄의 약속, SKT의 약속이라고 보고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다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가지로 언론과 국민 여론층으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유부단하다, 심지어는 무능한 것 아니냐, 정부 평가에서도 매우 안 좋습니다. 저는 이런 직무와 권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서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강경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저도 그 점에는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장과 업자들이 충정을 이해해 주어야 하는데 처음으로 사장급 고위 간부가 와서 약속을 한 점을 감안해서 제가 여러 상임위원님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우선 같은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견진술인으로 온 분이 말씀하셨지만 SKT의 당연한 의지라고 생각하고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좋은데 '방송통신위원회 위신과 권능과 직무를 포기하고'라는 그 표현은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통신시장이 안정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규모집금지 <제2안> 7일간 부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결정해야 할 부분이 시기의 문제입니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그것을 여쭙 보려고 했는데 7일간이라고 다수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언제 신규모집금지를 할 것인가도 기간만큼은 아니지만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거기에 대한 의논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혹시 이기주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아까 SKT에서 자료를 가지고 1월 말까지 조사를 했는데 그 이후 2월 시장상황을 가지고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2월 1일부터 최근까지 이동통신 시장 상황은 이용

자정책국에서 파악하기로 어떻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아까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1월 19일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정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소한 범위 내에서의 위법행위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전체적으로는 안정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고 있고 또 상황반에서 즉각적으로 다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설령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2시간 이내에서 조치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그동안 마련한 종합대책, 일종의 안정화 방안에 따라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고….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이렇게 말씀 드렸던 것은 이동통신 시장 상황이라는 것이, 플레이어가 이동통신사업자가 있고 유통망 대리점·판매점이 있을 수 있고 단말기 쪽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보건대 지금의 시장 상황은 안정적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경우에 따라서 침체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번에는 기존의 조사대상 과열 판단기준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상당히 엄격하게 우리가 시도해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신규모집금지 시기를 그런 시장을 봐 가면서 집행하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 할 수 있는 것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2, 3일 후부터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하기에는 시장 상황이, 저희가 피심인 SKT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 전반적으로 생각한다면 탄력적으로 적용시기를 추후에 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의견을 드려 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신규모집금지를 7일간 부과하는 것을 결정하되 그 시기는 정하지 않고 있다가 시장이 약간의 과열현상을 보인다는지 또는 아까 말씀하신 SKT가 약속한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는지 그런 때에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위원장님 말씀과 똑같고, 아까 이형희 총괄께서 몇 가지 약속을 하고 갔는데 제가 사실 약속을 더 받고 싶었던 것은 조사방해건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계속 문제가 됐던 전산프로그램이나 기타 종전에 관례처럼 해 왔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직원들의 비협조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친 몸싸움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3가지 외에 그런 것에 대한 약속까지 포함해서 4가지를 받고 싶었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업무처리절차 개선사항 중에 그것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소비자 측면, 산업 전체 측면에서 보다가 이것이 단독조사까지는 안 가더라도 뭔가 조금 과열되겠다, 아니면 SKT의 시정명령 이행상태가 부적정할 때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의미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저희가 의결한 날로부터 신규모집금지를 발동하려면 며칠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통상 일주일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보다 더 단축할 수는 없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것보다 더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얼마나 단축할 수 있습니까? 한 5일?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 5일 정도면 가능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김재홍 상임위원

-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보니까 제재결정을 해 놓았는데 그 시행시기가 미정인 상태에서 또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또 제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재방안을 만들어도 이전에 해 놓은 것도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제재를 만들어 봤자 시행할 기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기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전부 안정되어 있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면 보류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저는 두 달 이내에는 필히 시행하도록 정해서 시장 상황이 나쁘면 하는데, 다만 그 기간은 두 달 이내라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김재홍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위반행위가 되어서 또 조사하고 그것이 나중에 제재하기 전 단계에서 위반행위 조짐만 보이면 바로 그때

이것은 집행하고 조사는 조사대로 따로 가자는 말씀이시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저희가 신규모집금지를 의결하면 기간은 정해지는 것이고 시기에 대해 추후에 정한다고 했을 경우 그 시기를 정하기 위해 별도로 안전을 보고하지는 않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위원회에는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안입니까?

○ 최성준 위원장

- 위원회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집행시기를 의결해야겠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집행시기에 대해서는 보고안건이든 어떤 형태든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개인적으로는 제재효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이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제재하는 것이 거의 두 달 걸리지 않습니까? 1월 말에 위반행위가 있었고 그리고 2월 초까지 조사를 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2월 11일까지 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위법행위의 발생, 그에 대한 조사 그리고 제재의 시행을 시기적으로 계속해서 텀을 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가지 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한다면 첫째는 4월 10일 이전에 조속히 제재를 마무리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특정한 시기에 다시 시장 상황과 제재 당사자인 해당 통신사의 이행조치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저희가 시행시기를 결정하는 2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크게 둘 중의 하나면 괜찮다고 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김재홍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뒤로 한정 없이 미루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이것을 집행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태에서 언제까지 하기가.... 결국 단말기유통법의 취지는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물론 딱 언제까지 정해 놓고 그 이전에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있겠습니까만 김재홍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데드라인을 염두에 두고, 위원님들께 그때 보고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준비단계가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금방 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희가 시장 상황이나 SKT....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임시회의라도 바로 열어서 하면 5일 후부터 바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김재홍 위원님께서 두 달을 말씀하셨는데 두 달을 딱 못을 박기보다는 가급적 늦지 않는 기간 내에 이것을 집행하되 그 집행을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SKT에게는 미안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SKT로 하여금 좀 더 자기 약속한 것을 철저히 지키고 위법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제재 결정을 해 놓고 그 집행을 무기한으로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지요.

○ 최성준 위원장

- 무기한은 당연히 안 되지요.

○ 김재홍 상임위원

- 제재 결정을 했으면 바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까 고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월 10일이 기준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 상황을 봐서 정책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두 달 이내다, 5월 말 이내에는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면 바로 집행하지 나중에 '너 봐서 하겠어', 이것은 아무리 정책당국이지만 SKT에도 도리가 아니고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한은 정해서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집행은 제재결

정 직후에 하는 것이 맞고, 그런데 정말 우리 정책수단이 너무 없는 상황에서 활용하고 싶다면 유한 기간을 정해서 5월 말 이전에는 하겠다는 것을 부대해서 해야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굳이 기한을 정하기 원하시면 5월 말은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 조금 더 늘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러면 제재 결정의 의미나 효과는 떨어지지요. 이상하지요. 결정해 놓고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것이지요.

○ 최성준 위원장

- 그런 측면도 있고 양쪽 측면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시행시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임시로 회의소집도 가능하고 결정이 또 바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따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가능하면 김재홍 위원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면서 다만 여기에서 그것을 딱 언제 이전에 한다는 것을 정해 놓지는 않고 저희가 논의할 때 김재홍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의 의견이 그러신 것 같으니까 신규모집금지 7일을 부과하는 것을 확정짓고, 그 시기는 저희가 시장 상황을 봐서 정하기로 하되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김재홍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 시기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장님, 다음 주 월요일, 정례 간담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 번 논의하는 조건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그것은 내부적으로 다음주 월요일 날 간담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원 형사 고발 부분이 있습니다.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유도 행위와 관련해서 SKT 영업담당 임원에 대한 형사 고발 부분인데, 참고로 부위원장님께서도 교추위 회의 때문에 할 수 없이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가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형사고발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또 다른 분 의견 있으십니까?

○ 김재홍 상임위원

-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형사고발을 이미 한번 했고, 지금 이통3사 임원에 대한 경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또 이런 일이 터졌기 때문에 더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 사건에 대한 제재, 형평성에 비추어서 고발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지부진하고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 또 우리 판단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매우 중대한 사안이고, 아까 전산시스템의 은폐·삭제가 조작의 정도에 이르러서 공무집행 방해까지 갔다면 이것은 피할 수 없이 회사 차원의 CEO를 고발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재를 단순 반복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형사고발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좋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같은 의견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이번에는 임원 형사고발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사방해 과태료 부과에 대해, 조사방해 전산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고도화 총괄을 한 SKT ICT기술원장에 대해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메일을 통해 조사자료 삭제 지시를 한 SKT 직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아까 의견진술인과 이야기를 잠깐 한 부분이 있는데 의견진술인 측에서는 PS&M이 조사방해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부정했고 설사 T-Key+에 그런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작동이 안 됐고 그 내용에 대해서 SKT로서는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SKT ICT기술원장, 기술원장이 총 책임자니까 그 기술원에 있는 일정한 직원이 개발에 관여해서 내용을 알고 있다면 기술원장이 총체적인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ICT기술원에 있는 직원들이 은폐나 삭제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일부 관여한 정황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부분을 인정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이메일을 보내서 자료를 다 삭제하라고 이메일을 보낸 직원이 있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명확하게 이메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조사방해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다른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500만원씩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유통점에 대한 제재방안으로 가서 31개 유통점에 대해 시정명령,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및 사실공포에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지원금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것은 아이폰6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처음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에 위반건수 2건 이상일 때 50% 가중해서 150만원 부과하고..., 여기에 전에 적발됐던 적이 있는 업체도 있습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150만원씩 전부 31개 업체입니까?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31개 업체에 대해 그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사현장 접근을 거부한 3개 유통점, 조사자료 삭제 지시를 한 1개 대리점, 이것은 분당 대리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맞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조사방해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한 1개 대리점은 아까 이야기 나왔던 PS&M을 말하는 것이지요?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대리점 법인 및 그 법인의 대표자..., 이번에 그 프로그램을 작동했는데 작동한 실행행위를 한 사람보다는 그 대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하여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지금 쪽 정리한 대로 SK텔레콤에 대해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을 하고, 그다음에 2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규모집금지 7일을 하되, 그 시기는 추후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조사방해 과태료를 각 500만원씩 부과를 하고,

유통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명령을 하고, 31개 유통점에 대해 1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방해 3개 유통점과 2개의 대리점에 대해서는 법인과 대표자에게 각 50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회의 진행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마도 저희가 회의를 진행한 이래로 가장 오랜 시간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피곤하실 것 같은데 <의결안건 나>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까지 진행하고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5-12-052)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2월 17일 기간 중 29개의 대리점과 판매점이 단말기 지원금을 이용자에게 과다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작년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부터 금년 2월까지 국민신문고 등 민원을 통해 접수된 위법행위를 저희들이 인지하여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금년 1월 12일부터 2월 17일간 43개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현장조사와 금년 3월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조회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실조사 결과입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작년 10월 1일부터 금년 2월 17일까지이고, 조사대상은 국민신문고 등 위법행위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43개 대리점 및 판매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위반사항입니다. 26개 유통점에서 총 1,923명의 가입자 중 918명에게 공시지원금을 평균 205,000원을 초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판매점 선임에 대한 사전승낙을 받고 그 사실을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하나 2개 판매점에서는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조사 시 2개 판매점에서 영업방해 등의 이유로 지원금 지급 관련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조사관의 USB 탈취 시도 및 컴퓨터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 조사를 거부·방해하였습니다. 다음은 위법성 판단입니다. 26개 유통점이 일부 이용자에게 공시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법 제4조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고, 2개의 판매점이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을 한 행위는 법 제8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며, 2개의 판매점이 관련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하지 않는 등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이에 대한 시정조치안으로 먼저 법을 위반한 27개 유통점에 대하여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지원금 과다 지급 및 사전승낙제 미준수 행위의 즉시 중지, 그다음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령하고, 법 제22조 및 법시행령 [별표3]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위반한 유통점에 대해서는 각각의 해당 요건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안건에 있는 것으로 같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전승낙제를 위반한 1개 판매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조사를 거부·방해한 2개의 판매점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기타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것은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위법성 판단과 시정조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정형적으로, 기계적으로 부과되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17시 24분 정회 】

【 17시 42분 속개 】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 (주)KT스카이라이프의 SD서비스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5-12-053)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다> ‘(주)KT스카이라이프의 SD서비스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주)KT스카이라이프의 SD서비스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제안 드리겠는데 이것이 최근 티타임 때 논의가 되어서 사실관계나 사무국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피심인 측에서 의견진술인이 나와 있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나와 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주로 그분들 소명을 많이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지요.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 경과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를 말씀 드리면 스카이라이프는 방송품질 개선과 고객서비스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해서 2010년 1월부터 보도자료·납부고지서와 AS기사의 현장설명 등을 통해 SD서비스 종료와 고화질 HD 전환 조치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3년 말 기준으로 SD가입자가 여전히 347,000명이 남게 되자 해당 사는 '14년 4월부터 '장기고객 고화질 무상전환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14년 9월까지 SD서비스 종료 작업을 집중 추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카이라이프는 SD가입자를 대상으로 OSD(on screen display:스크린자막) 과다 노출, 방송서비스의 일방적 이용정지 및 임의적 직권해지 등의 방식을 통해 SD가입자들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료는 지난번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5페이지 위법성의 판단 문제입니다. 이러한 OSD 과다 노출로 인한 시청화면 제한 행위나 방송서비스의 일방적인 이용정지 그리고 임의적인 직권해지 행위 등은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방송법 제85조의2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5에 따른 [별표 2의2] V-1호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피심인의 의견은...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직접 듣기로 하고, 시정조치안에 대해서는 피심인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주)KT스카이라이프 측 관계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주)KT스카이라이프 의견진술인 입장)

○ 최성준 위원장

- 김윤수 부사장님 나오셨습니까?

○ 김윤수 (주)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박현우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 박현우 (주)KT스카이라이프 영업관리팀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앉으시지요. 지금 저희가 심의하고 있는 (주)KT스카이라이프의 SD서비스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수 (주)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

-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카이라이프 운영총괄을 맡고 있는 김윤수 부사장입니다. 오늘 금지행위 위반이라는 좋지 못한 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몹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SD 종료는 고품질 HD방송을 위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했던 일이었습니다. 당시 SD가입자가 34만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HD가입자가 155만명 정도 있었는데 당시에 65개 채널에 대해서 SD와 HD 채널을 중복해서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위성 중계기 자원이 있었고 그 HD로 전환한 가입자들에 대해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 한 해 동안에 HD서비스를 위해 수신기 설치, 그다음에 설치인력이 직접 나가서 또 작업하고 홍보비 이런 등등해서 260억원 정도를 투자한 바 있고, 이를 통해 저희들이 수익을 얻은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SD가입자를 HD로 전환시키면서 이용요금도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셋톱박스 비용도 추가로 받지 않았고 또 약정 만료 부분에 대해서도 그대로 승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위성서비스는 단방향 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연락이 안 돼서 우편도 발송해 보고 전화로도 연락 드리고 방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접촉이 안 된 고객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HD로 전환하면서 아까 말씀 드린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거부했던 고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청 실태 확인을 위해 OSD 송출, 즉 온 스크린 디스플레이(On Screen Display)를 하고 이용정지를 불가피하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지 관련해서는 수신기 무단이전, 단순 거부자, 단순 거부자라 하면 '알박기'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78명에 대해서도 미래부와 협의를 해서 SD 상품 폐지 약관 변경 승인 기준에 맞춰서 SD 종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아까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을 해도 닿지 않는 고객, 단순 거부하는 고객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직권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고객에게 불편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다시 말씀 드리고, 이 SD 종료 행위 자체가 고품질의 HD, 대다수의 가입자를 위해 했던 점을 헤량하여 주시고 선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위원님들께서 의견진술인에게 확인하거나 질문할 것이 있으십니까?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HD 전환이 100% 안 되고 SD가 남아있으면 스카이라이프에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완전히 전환시켜야 미래부 측의 약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까?

○ 김윤수 ㈜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

-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중계기 자원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HD로 전환하는 시점에는 65개 채널에 대해 HD방송과 SD채널을 동시에 송출했습니다. 그런데 35만을 제외한 150만 정도는 이미 HD로 전환했는데 중계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HD가입자에 대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방송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 김재홍 상임위원

- SD가 남아 있으면 전면적인 HD방송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제한을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 김윤수 ㈜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HD로 전환할 때 시청자들에게 부담이 전혀 안 갑니까? 셋톱박스를 제공하는데 7~8만원 정도의 임대 보증금은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윤수 ㈜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

- 원래 SD로 보증금을 내고 있었으면 추가적인 보증금은 없이 그대로 HD로 전환만 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대신 교환해 주는 것입니까?

○ 김윤수 ㈜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

- 예, 교환해 줍니다. 셋톱박스도 바꿔 드리고...

○ 김재홍 상임위원

- 임대료는 따로 내는 것이 없고...

○ 김윤수 ㈜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

- 예, 추가로 더 받지 않았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수신료만 내면 되는 것이지요?

○ 김윤수 ㈜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

- 예,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SD와 HD 이용자의 수신료 차이가 없습니까?

○ 김윤수 ㈜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

- 없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SD서비스 이용자들이 HD로 전환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이용자들은 스카이라이프에서 전화가 오든 우편이 오든 귀찮다, 아니면 통상적으로 있는 마케팅이라고 판단해서 거부한다고 봅니까? 이유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추가적인 비용 없이, IT 쪽에 잘 모르는 분도, SD에서 HD로 되면 화질도 좋아지고 채널도 많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생각합니까?

○ 김윤수 ㈜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

- 일단 연락이 두절되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질문의 대상은 아니고, 연락된 분들에게 고객보호 혜택이라고 해서 요금차이도 없고 셋톱박스를 무료로 교환해 드린다고 설명했는데도 전환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다른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회사 측에 더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을 바란다는지 이렇게….

○ 김윤수 ㈜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

- 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사실은 전환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사무처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컴플레인(complain)을 하는 이용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컴플레인을 하는 것입니까?

○ 김성규 방송시장조사과장

- 저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노인들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러한 혜택이 있다고 해도 귀찮으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보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컴플레인의 내용은 여기에 적시한 대로 '나는 그대로 보고 싶은데 왜 갑자기 화면을 가리느냐, 못 보게 하느냐, 또 갑자기 사유도 없이 정지시키느냐', 그런 종류의 컴플레인들이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아까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연락 자체가 안 되는 가입자들, 평소에 그분들에게 요금고지서를 보내거나 그분들이 요금 납부하는 것들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 김윤수 ㈜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

- 요금고지를 지로로 한다든지 통장에 무통장 입금한다든지 신용카드 등 3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가입자가 만약에 이사를 가시거나 연락처를 바꾼 경우에 저희들이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금은 내더라도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위성가입자 분들에 대해 지로나 통장을 통해 연락처를 다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과 연락두절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다음에 권역 외 원래 서비스를 받던 곳에서 수신기와 안테나를 떼어서 이사 가서 다른 데서 방송을 보시거나 아니면 중국으로 가지고 가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접근이 곤란했던 상황이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같이 나오신 팀장님이 리텐션(Retention) 팀장을 하셨는데 혹시 HD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타 매체로 갈 것을 우려해서 의사를 충분히 묻지 않고 전환 가입시킨 의도는 없었습니까?

○ 박현우 ㈜KT스카이라이프 영업관리팀장

-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2013년에 그 자리에 계셨는데...

○ 박현우 ㈜KT스카이라이프 영업관리팀장

- 저희는 SD가입자에 대해 고화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선의적인 차원에서 시행한 것이고 그런 의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사무처에 하나만 여쭙 보겠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기존의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거나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안내를 제대로 못 하고 이런 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면 제3자가 봤을 때 이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 김성규 방송시장조사과장

-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객과 연락을 몇 번 시도했는데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로서는 기존 고객의 이익이 명백히 이용약관상 규정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지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어긴 것에 대해 제재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불가피한 점은 인정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약관 위반이나 고객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안전을 올린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물어보신 취지는 당연히 3가지 행위를 한 것은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는 맞는데 비록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혹시 파악한 것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이지요?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HD로 100% 전환을 시켜야 하는 데드라인 내지는 그런 하나의 목표가 있고, 그 데드라인 내에서 전환은 시켜야겠고 또 충분히 사전에 고지하고 안내는 해야겠고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은 쉽지만 굉장히 힘든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저도 사무처에 있을 때 개인정보 관련해서 사전에 동의 받지 않은 것을 시정명령을 내렸더니 그 당시에 통신사들이 그 동의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메일로 통보해서 수신확인이 되는 경우 등 아무리 해도 결국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서 저는 분명히 현상은 위반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정상참작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스카이라이프에서는 그런 불가피성을 확대 해석해서 3번, 4번 시도했어야 하는데 2번만 했을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례를 말씀 드리면 카드회사나 자동차보험회사나 특히 통신사에서 저에게 전화 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진짜 새로운 서비스를 알려주려고 하지만 텔레마케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앞으로 스카이라이프뿐만 아니고 통신·방송서비스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실제로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 패턴, 관행을 감안해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안 지키려는 사업자들과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는 데도 안 되는 부분을 저희가 판단을 잘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 김성규 방송시장조사과장

-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만 저희가 아쉬운 것은 단적인 예로 이용정지나 직권해제 할 때에는, 두 부류로 분류되는데 한 부류는 단순하게 전환을 원치 않는 사람들, 다른 한 부류는 무단 이전 가입자들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무단 이전 가입자들이라 하면 수신기를 다른 데로 가지고 가는 경우인데 그런 곳은 최소한 직접 방문해서 해당사에서 입증할 수 있지 않았을까..., 수신기를 무단 이전했다면 직접 방문해서 제대로 있던 수상기가 다른 데로 갔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입증해 보라고 했더니 방문한 구체적인 내역도 없고 또 점검한 내역도 없어서, 다른 불가피한 사유들은 인정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은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불가피한 사정은 있어 보이지만 KT스카이라이프가 좀 더 소비자들에게 이런 것을 알리려는 적극적인 노력들을 한 것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잘 눈에 보이지 않았다?

○ 김성규 방송시장조사과장

- 조금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책임과 이용자의 권익 증진을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시 합니다. 물론 방송산업의 발전, 경제적 효과들에 대해서 등한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양자택일을 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방송사업자들의 공적책임 구현 그리고 이용자의 권익보호가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미래부가 판단하는 것과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말씀 드립니다. 아까 이기주 위원님과 문답하는 과정에서 제가 궁금한 것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위성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일단 직접수신이 있을 것이고, 공시청 안테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OTS나 DCS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이외 또 방법이 있습니까?

○ 김윤수 ㈜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

- 그 정도입니다.

○ 박현우 ㈜KT스카이라이프 영업관리팀장

- 없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이 전부지요? 그리고 지금 SD에서 HD로 전환할 때 이용자의 부담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TV수상기의 교체는 필요 없습니까?

○ 박현우 ㈜KT스카이라이프 영업관리팀장

- SD에서 HD로 갈 때에는 TV수상기 교체 없이...

○ 고삼석 상임위원

- 전혀 교체 없이 셋톱박스만 교체하면 됩니까?

○ 박현우 ㈜KT스카이라이프 영업관리팀장

- 셋톱박스만 교체하면 되고, 셋톱박스과 안테나가 조금 커집니다. 지름 10cm 정도 커지는 안테나만 교체하면 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TV가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도 셋톱박스만 바꾸면 다 볼 수 있습니까?

○ 박현우 ㈜KT스카이라이프 영업관리팀장

- 예, 볼 수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디지털이 안 나오는 옛날 아날로그TV도 다 가능합니까?

○ 박현우 ㈜KT스카이라이프 영업관리팀장

- 예, 가능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금 HD 전환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계속 소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HD 전환은 물론 정부의 정책으로 있는데, HD 전환에 대해 미래부의 명시적인 요구가 먼저 있었습니까, 아니면 스카이라이프 측에서 “SD 가입자를 이리이러한 방식으로 HD로 전환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요청이 먼저 있었습니까?

○ 김윤수 (주)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

- 제가 당시에 없어서 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박현우 (주)KT스카이라이프 영업관리팀장

- 그전부터 정부에서 디지털 전환 정책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관련 기관들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가입자가 177만명일 때부터 전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서 좀 더 빨리 시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미래부에 제출한 적 있습니까? 약관 변경 승인이 되겠지요.

○ 박현우 (주)KT스카이라이프 영업관리팀장

- 예, 그 과정에서 저희가 사전에….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을 명확히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미래부에 요구했는지, 아니면 정책에 발맞추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히 어떤 형태로 미래부에 의사를 표시했습니까?

○ 박현우 (주)KT스카이라이프 영업관리팀장

- 미래부에 저희가 고화질 전환에 대해 저희의 계획을 보고하고, 이용약관….

○ 고삼석 상임위원

- 어떤 형태로요? 담당자를 만나서 구두로 했습니까?

○ 박현우 (주)KT스카이라이프 영업관리팀장

- 예, 구두로 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정부와 정책을 협의하는데 그 정도로 해도 됩니까?

○ 김윤수 (주)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

- 약관변경 승인이기 때문에, SD를 종료 하려면 약관을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미래부에 가서

당연히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약관을 가지고 가셨을 것 아닙니까? 지금 구두로 하셨다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 박현우 (주)KT스카이라이프 영업관리팀장

- 저희가 HD 전환이 완료되려면 SD 가입자가 제로가 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SD 패키지 상품을 폐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용약관 승인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 고삼석 상임위원

- 문건을 가지고 가서 구체적으로 협의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 박현우 (주)KT스카이라이프 영업관리팀장

- 협의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미래부와 공식적인 회의는 몇 차례 정도 열어 의견 교환을 했습니까?

○ 박현우 (주)KT스카이라이프 영업관리팀장

- 제가 약관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저희가 2014년에는 수차례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지금 스카이라이프 이용자들에게 기본적인 채널변경을 고지할 때 스크롤자막으로 고지가 가능하지요?

○ 박현우 (주)KT스카이라이프 영업관리팀장

- 예, 가능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스크롤자막으로 'SD 이용자들 HD로 전환하십시오'라고 고지를 했습니까?

○ 박현우 (주)KT스카이라이프 영업관리팀장

- 예, 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했으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했습니까?

○ 박현우 (주)KT스카이라이프 영업관리팀장

- 스크롤자막은 저희가 거의 연중에, 가능한 시간대에는, 이용불편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진행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특정해 주시지요. 혹시 언제부터 언제까지 스크롤자막을 했는지 정확히 파악되니까?

○ 박현우 ㈜KT스카이라이프 영업관리팀장

- 2010년부터는 계속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때는 전환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덜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박현우 ㈜KT스카이라이프 영업관리팀장

- 2014년에 저희 나름대로의 데드라인을 정하고 그때부터 OSD나 다른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스카이라이프의 경제적인 이득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요금을 안 올렸고, 가입자들의 추가적인 수상기 교체가 없었고 그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HD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요금인상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윤수 ㈜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

-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정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HD로 전환하는 것은 결국 ARPU를 높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SD 가격을 이용자들에게 청구하겠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패키지를 바꾼다고 하면서 요금을 올리겠다는 정책 아닙니까?

○ 박현우 ㈜KT스카이라이프 영업관리팀장

- 아닙니다. SD 가입자를 전환할 때 저희가 동일요금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지고 있고, 오히려 저희 위성방송 수신료가 2013년에서 2014년에 186억 7,0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올해도 위성방송 수신료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 위성방송 신규가입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고 기존 가입자들이 재약정을 하면 오히려 요금을 인하해 주는 상황입니다. 기존 SD에서 HD로 전환된 가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요금을 올리게 되면 약속 위반으로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 그 약속은 계속 지켜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약정 때문에 요금이 인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HD 강제 전환자들로부터 혹시라도 나중에 요금인상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 박현우 (주)KT스카이라이프 영업관리팀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이 여쭙 본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 2014년 4월에 장기고객 고화질 무상 전환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2014년 9월까지 하기로 결정한 셈이지요?

○ 박현우 (주)KT스카이라이프 영업관리팀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약관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 미래부와 협의했던 것이고요?

○ 박현우 (주)KT스카이라이프 영업관리팀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고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것은 2014년 9월이라는 시한이 KT스카이라이프 측에서 “우리가 2014년 9월까지 하겠습니다”라고 제안해서 된 것인지, 아니면 미래부 측에서 “빨리 전환을 해서 2014년 9월까지야 마쳐야 한다” 그렇게 해서 약간 떠밀리듯이 그 기한을 2014년 9월로 정해 놓은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 박현우 (주)KT스카이라이프 영업관리팀장

- 그 계획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미래부에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려서 협조를 구한 부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알겠습니다. 다른 것 더 확인할 것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진술인 더 말씀하실 것은 없으십니까?

○ 김윤수 (주)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

-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아까 몇 시에 오셨습니까?

○ 김윤수 (주)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

- 3시에 왔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많이 기다리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 사건의 논의가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많이 기다리시게 됐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수 (주)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

-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주)KT스카이라이프 의견진술인 퇴장)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의견진술인의 진술도 (주)KT스카이라이프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투지 않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정상이 있으니 그것을 참작해서 가벼운 제재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시정조치안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시정조치 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포해 드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방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정명령은 오늘 의결해 주시면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토록 하며, 시정조치 이행계획 제출 및 결과를 보고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에 과징금 부과 방안입니다.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SD 가입자 시청권을 제외하고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와 관련해서 가입자의 귀책사유가 확인되지 않았고, 또 그 절차상의 통지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점을 봤을 경우에는 방송법령 위반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그리고 과거 제재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도 과징금 부과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필수적 적용, 추가적 적용을 거쳐서 관련 서비스 매출액의 2% 내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겠습니다. 관련 매출액은 2011년~2013년까지 3개년 HD 매출액 평균인 779억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말씀 드리면 스카이라이프의 방송법상 금지행위 위반행위는 명백히 SD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만 OSD 과다 노출에 따른 피해 가입자 수가 총 가입자 수에 비해 5%에 그친다는 점, 그리고 SD 이용자에게 추가비용 부담이 없이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는 HD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점, 그리고 이번 위반행위 발생 이전에 정상적인 홍보를 통해 HD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던 점을 감안할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가 중대성이 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과징금 부과기준상의 중대성 약함 중에서 0.2%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관련매출액 779억원에 0.2%를 곱할 경우에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필수적 조정에 대해서는 4

개월 동안 위반행위가 지속된 점을 고려할 때는 10% 가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반횟수에 따른 필수적 조정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가적 조정 관련해서는 이번 금지행위 조사에 적극 협력했다는 점에서 20%까지 감경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처럼 기준금액의 필수적 적용과 추가적 적용을 거쳐서 산정한 최종 과징금 1억 3,700만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시정명령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가 없으실 것 같고, 과징금 부과에 대해 적정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과거의 과징금 부과사례를 보니까 SO 디지털 전환 허위영업 사례가 있는데, 이때 허위영업의 한 가지 예만 대표적으로 한 번 들어보십시오.

○ 김성규 방송시장조사과

- 아날로그가 없어지고 앞으로는 아날로그 방송을 못 본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디지털로 전환해야만 방송시청이 가능하다고 거짓 고지한 사항들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다른 두 사례는 조금 유형이 다른 거구요.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사건인데 그때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영업을 했다고 저도 기억하는데,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사무처에서 제출한 대로 의견을 모으면 따라가겠습니다만 혹시 추가적 조정 중에 0.2%는 유지하고, 그 외에 추가적인 조정을 생각할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추가적 조정으로 조사에 협력한 점에서 20%를 감경했는데 그 이외 또 다른 감경을 말씀하십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직접조사를 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몸에 와 닿지는 않지만 최근에 TM 실상을 쭉 보면 이용자와 컨택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화가 어렵다고 한다면 문자로 보내거나 이메일로 보내거나 SNS를 통해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인 경우에는 불가피성이 있어 보여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다면 조사협력 부분 외에 추가적으로 감경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혹시 감경사유로 <1>번이 조사협력이고, <2>번~<7>번까지 쪽 있는데 그중에서 여기에 적용을 더 할 수 있는 내용의 것이 있습니까?

○ 김성규 방송시장조사과장

- 다른 항목들은 저희가 봤을 때 명백하게 적용하기 힘든 것 같고, 기타 항목 10% 이하라는 부분은 적용해 본 사례가 없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저희가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미 HD로 다 전환되고 난 다음이지요? 그런 셈입니까?

○ 김성규 방송시장조사과장

- 완전 전환이 된 것이 아니고 전환된 것은 2014년 9월이니까 조사 착수는 그 이전에 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2014년 9월 15일부터 10월까지 기초자료 수집 및 실태점검을 했는데 HD 전환이 완료된 것은 언제입니까?

○ 김성규 방송시장조사과장

-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여기 계획에는 2014년 9월이라고...

○ 김성규 방송시장조사과장

- 9월 11일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저희가 조사에 착수한 것은 이미 HD 전환이 다 완료된 다음에 조사에 착수한 것 아닙니까?

○ 김성규 방송시장조사과장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사가 사실조사도 있겠고, 저희가 8월에 민원을 받아서 기초자료 수집하는 단계...

○ 최성준 위원장

- 여기에 써놓기를 주요경과라고 해서 '2014년 9월 15일~10월 22일까지 기초자료 수집 및 실태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그전에도 한 것이 있습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엄밀하게 보통 조사라고 하면 기초자료 수집이나 실태점검이나 모니터링을 조사라고 할 수는 없지요. 여기에 보면 사실조사가 현장방문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서류를 통해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실태점검과 조사와는 구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실태점검을 조사로 봐도 9월 15일부터 조사했다고 주요경과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9월 11일에 HD 전환이 완료가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쭙 보는 이유는 조사가 늦었지 않냐고 묻는 것이 아니고 감경사유로 무엇을 더 적용할 소지는 없는 것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 그렇게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직권해지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 김성규 방송시장조사과장

- 다른 데로 간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SD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지금 감경사유를 쭉 봤는데, 굳이 적용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저희가 사실확인을 한 것처럼 결국에는 2014년 9월 11일이라는 시기는 KT스카이라이프가 정해 놓았지만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상당수의 가입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전환을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전환을 거부한 어려웠던 상황도 하나의 정상 참작사유로 본다면 기타에서 10% 감경을 한 번 더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사무국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조정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의견들은 어떻습니까?

○ 김재홍 상임위원

- 할 수 있으면 기타에서 감경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재홍 위원님 의견은 그러시고, 다른 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감경사유를 2가지로 참작할 수 있습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아까 위원장님께서 물어본 것 같은데 기타에 해당하는 사안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조사협력은 구체적으로 위에 있고요.

○ 김성규 방송시장조사과장

- 현재까지 적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고, 그래서 기

타를 저희도 고민했습니다만 전례가 없어서….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기타 항목으로 적용해도 규정상 아무 문제없다고 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과정에 있어서 참작할 점이 있으면 기타 항목으로 10% 감경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과징금 부과기준은 결국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또 다시 결정해 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예를 들면 위성방송의 특성과 기능이 있고, 말하자면 방송 발전의 공헌점도 있다고 생각하고, 향후 남북방송교류에서도 공헌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성상 음영지역, 난시청 지역에 위성방송의 특성을 발휘해서 시청자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이기 때문에 정책상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타 감경을 한 번 더 해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의견들이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추가적으로 10% 더 하면 1억 7,100만원에서 30%가 감경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1억 1,990만원입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1억 1,990만원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러면 사무처에서 올린 것에 비해 4,000만원 차이 납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2,000만원 정도….

○ 최성준 위원장

- 1억 3,700만원인데 1억 1,900여만원이니깐 1,800여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큰 돈이네요.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기타 10% 더 추가 적용해서 최종 과징금은 1억 1,99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명령과 1억 1,990만원 과징금 부과하는 것으로 시정조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관련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관련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관련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는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동의 절차 개선 방안과 금년도 재허가 사전동의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절차개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도 도입의 배경 및 법적 성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사전동의 절차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방통위는 현재 사전동의 절차를, 지난 '13년 5월에 보고 드린 ‘방송사업자 허가 등의 사전동의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부가 사전동의를 요청하면 방통위가 방송법 제10조에 따른 심사기준을 준용하여 예비검토 또는 심사를 거쳐 동의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 부처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방송법 제10조에 따른 심사기준·항목 등을 동일하게 적용함에 따라 심사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한편 방통위는 처리기간 만료 30일 전에 동의요청을 받음으로써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하지 못해 심도있는 심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전동의 절차 개선 방안입니다. 기본방향으로 사전 동의의 제도는 방송의 공정성·공공성·공익성을 확보하고, 규제범위 최소화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처 간 협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유선방송, SO (재)허가 사전동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선내용은, 미래부는 심사·동의요청을 접수 후 55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방통위는 미래부로부터 통보받은 후 35일 이내에 심사하여 의결·통보토록 하고, 미래부는 허가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방통위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아서 90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심사의 이원화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회 사무처는 미래부로부터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에 상임위원에게 사전보고하여 약식심사 또는 본 심사 대상사업자로 분류하고, 미래부 심사결과 재허가 기준점수인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한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약식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반면에 650점 미만으로 조건부 재허가 대상 사업자와 재허가 기간 동안 방송의 공익성 등과 관련하여 방통위의 집중 심사가 필요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본 심사위원회, 이 경우에는 위원장을 방통위 상임위원께서 맡는 것으로 해서 심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전동의 여부 의결입니

다. 미래부 사전동의 요청에 대해 방통위는 '동의', '조건부 동의' 또는 '부동의'로 의결하여 통보하고자 합니다. 사전동의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입니다. 약식 심사위원회는 방송·법률·회계분야, 외부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여 심사하는데, 미래부의 심사의견 및 허가조건 등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을 중점 검토하여 적절성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토록 하고자 합니다. 본 심사위원회는 방통위 상임위원과 방송·법률·회계·시청자 분야별 외부전문가 6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방송법 제10조 제1항의 심사기준을 준용하여 미래부와 차별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안을 마련하여 적용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의기준입니다. 본 심사 결과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하거나 650점 미만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동의 의견을 제시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중계유선방송 RO 재허가 및 SO 변경허가 사전동의 처리입니다. 경미하고 단순, 반복적인 사안인 RO 재허가 등과 SO의 변경허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사무처가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방통위의 서면의결을 받아 처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부처간 협력 강화 방안입니다. 사전 긴밀한 협의를 위해 미래부는 SO 재허가 신청서 접수 즉시 이를 방통위에 통보하고 이후 자료보정, 의견청취, 심사일정 및 심사결과 등을 방통위와 공유코자 합니다. 사후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방통위의 동의 조건 내용을 미래부가 충실하게 반영·관리하도록 양 부처간 과장급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 허가 유효기간이 금년에 만료되는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에 대해 재허가 사전동의를 심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자는 SO 26개사, RO 19개사, 위성방송 1개사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은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투명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법률·회계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 3~7인으로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심사위원회는 방통위 상임위원이 맡게 되겠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허가 만료 기간에 따라 한 3차례로 구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계유선방송 19개사에 대해서는 사전동의와 관련해서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무처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서면의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오늘 보고 드린 내용을 접수해 주시면 4월에 제1차 심사위원회 그리고 6월에 제2차 심사위원회, 11월에 제3차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최종적으로 핵심사항을 정리하면 미래부에서 심사를 해서 1,000점 만점에 650점 미만으로 조건부로 재허가하려는 사업자와 그다음에 650점 이상을 얻기는 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판단컨대 재허가 기간 동안 방송의 공익성 등과 관련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나머지는 약식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방송사업자들에게 불편도 덜 끼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한 예외적인 경우에, 본 심사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동의하는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방송의 공익성 부분이나 편성 부분에 대해 좀 더 높은 배점을 두고 심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정리하면 됩니까?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상임위원

- 미래부 심사결과 650점 이상을 받았지만 방통위가 보기에 방송의 공적책임이나 공정성 문제를 들여다봐야했다면 선정해서 본 심사를 할 수 있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650점 미만을 받았는데 미래부가 재허가·재승인을 해야겠다고 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전부다 본 심사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재홍 상임위원

- <붙임>에 보면 심사항목 배점기준이 있습니다.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부분이 미래부는 100점인데 비해 우리는 120점이고,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 계획의 적절성도 역시 우리는 120점이고 미래부는 100점입니다.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도 그렇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무게를 두어서 보는 항목과 미래부가 중시하는 항목의 배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 정종기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그런데 아까 잠시 이야기했지만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그리고 기획·편성 문제, 이것이 사전동의 제도를 규정한 방송법에 근거가 나와 있는 것입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방송법상에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동의 제도를 만든 그 목적에 따라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심사할 때 이런 항목들에 대해 배점을 더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반영했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어떤 법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김재홍 상임위원

- 매우 바람직한 심사항목이고 배점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전 동의제에 대해 법적 절차를 잘 정리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사무처가 만든 이 안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다 동의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중요한 부분이어서요. 조금 전에 보고할 때는 빠졌지만 보고안건 2페이지입니다. 법적 성격 부분은 한 번 확인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방송법 제9조에 따라 미래부는 위성방송, SO, RO 허가·재허가 시에 미리 방통위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사전동의 절차는 행정기관 간 협력제도인 ‘합의’, ‘협의’ 제도에 비취 볼 때 허가 여부에 대한 ‘동의’로써 처분자체에 대해 가부 의견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전동의는 ‘동의 또는 부동의’로 구분할 수 있고, 방통위는 사전동의 시에 일정한 부대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미래부는 이를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 이 의견은 법률자문을 받고 이런 내용을 보고한 것입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법률자문을 받았습시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저희는 사전동의 심사 시 ‘동의 또는 부동의’로, 그러니까 허가 내지는 불허,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저희의 의견에 대해 미래부는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니는 것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상당히 권한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사전동의 제도를 둔 이유가 방송의 공적책임 부분을 지키기 위해 둔 제도이기 때문에 미래 부에서는 저희의 사전동의에 대해 반드시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사전동의제를 두게 된 경위에 대해 잠깐 설명하는 것으로 저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동의제는 2013년 정부 출범 당시에 국회에서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통해 법으로 규정해 준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명확한 기준 없이 유지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유료방송, 특히 SO의 공적책무 구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사전동의제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산규제, 결합판매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나 케이블TV사업자들의 위법한 영업활동도 규제의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보고안건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미래부와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중으로 심사함으로써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중규제 논란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출범 당시에 정부 조직개편이 미봉책으로 마무리된 측면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과제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케이블TV 업무 관할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는 것도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장기적으로는 필요...

○ 최성준 위원장

- 고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래부가 심사해서 저희에게 동의 요청을, 접수 후 55일 이내에 해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은 미래부와 충분히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 박동주 방송지원정책과장

- 협의되어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안건은 다들 찬성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오늘 아마 가장 길게 회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논의사항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4월 3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제1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8시 37분 폐회 】